형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ブ**

Open Data, Share Value!

공공데이터 그랜드 오픈 포럼 2014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발표자료



- •일시 **2014.5.23** | 금 | 13:30~16:30
- ●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무교청사 회의실(지하1층)





국가오픈데이터포럼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개최 계획

■ 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분	교육 등록	
14:00~14:01	1분	내빈 입장 및 소개	사회자
14:01~14:03	2분	개회사	안전행정부 국장
14:03~14:05	2분	축사	한국정보화진흥원장
14:05~14:20	15분	활용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이용석 과장 (안전행정부)
14:20~14:40	20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민세희 대표 (랜덤웍스)
14:40~15:00	20분	링크드오픈데이터(LOD)	오원석 대표 (LiST)
15:00~15:20	20분	모바일 '하이닥' 활용 사례	서정호 부장 ㈜엠서클
15:20~15:30	10분	Coffee Break (휴식)	
15:30~16:00	30분	공공데이터 등록 관리	한국정보화진흥원
16:00~16:30	30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
16:30~16:35	5분	경품 추첨	

[※] 세부 일정의 주요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목 차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발표자료

활용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이용석 과장 (안전행정부)
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민세희 대표 (랜덤웍스)
(3.) 링크드오픈데이터(LOD) ····································
오원석 대표 (LiST)
4. 모바일 '하이닥' 활용 사례
서정호 부장 ㈜엠서클
5. 공공데이터 등록 관리73
한국정보화진흥원
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113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순서 개방 정책 현황 개방 추진 성과 이용 활성화 계획 및 협조 사항



CONTENTS

활용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 1. 개방 정책 현황
- Ⅱ. 개방 추진 성과
- Ⅲ. 이용 활성화 계획 및 협조사항





전략적 개방 및 수요자 중심의 개방 확대

15대 전략 분야 중점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개방 우선 전략분야는 '14~'15년에 중점 개방
- ✓ 전략분야 선정: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 수렴
- → 전략분야 선정 → 관련부처 협의 및 개방 계획 마련
- → 15대 전략분야 확정



실 수요자 대상의 맞춤형 개방

- 민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여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
-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발굴
- ✓ 개인화된 수요자 맞춤형 'my Data'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 * 개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목록은 개방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데이터포털에 모두 공개



5



품질 제고 및 표준화

공공DB 품질제고

- 15대 전략 분야의 DB 품질 개선(121종*)을 중점 지원하고, 각 기관들이 자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통 절차 및 체계 마련
- ✓ 공공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14년 38개 DB)
- ✓ 기관별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 및 전문 기술 상시 지원(공공정보품질센터, www.gooddata.kr)

공공데이터 표준화

- 국가차원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을 유지하여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반 마련
- ✓ (공공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데이터 유형별 개방 항목, 용어, 형식, 코드 등에 대한 표준화 수립 (주차장, 복지시설 정보 등)
- (표준 포맷)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형식 표준화

질병관리본부



일관성 5.72%

5배 증가 🌽 1.91%

오류육 2.24%

5배 감소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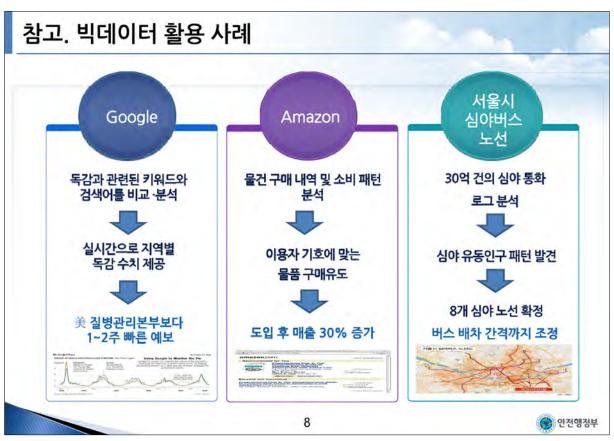
식약처 - 의약품, 의료기기DB

- 의약품, 의료기기DB를 기반으로 단어추출, 사용빈도, 행정표준용어 비교, 검토를 통한 참조용 표준 단어 사전 수립
- 표준용이 사전 생성을 위한 참조용이 사전을 수립 (<u>행정표준단어 수 : 1,008개, 식약처 표준단어 수 : 183</u>)
- 코드 중복을 분석하여 표준코드 사전정비(중복코드:73개)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 추진: ① 법제화 및 시행 ② 추진체계 정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총괄하는 법제화 추진이 필요,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13.6.27) → 공포('13.7.30) → 시행('13.10.31) 🔄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등록 및 제공절차, 데이터 제공의무 및 면책 추진체계 공공테이터저르위원회 안전행정부 (정책총괄) 공공테이터제공책임관 분쟁조정위원회 5명의 전문가로 구성)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 안전행정부 11



참고. 공공데이터 활용 신청 (Top 10)

'14년 4월 데이터셋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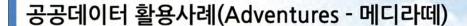
	데이터셋 명	제공기관	신청
1	유동인구DB	중소기업청	220
2	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공단	142
3	교육기본통계 (초, 중, 고등학교)	교육부	125
4	주요상권DB	중소기업청	123
5	경찰청 범죄통계	경찰청	115
6	교육기본통계(대학교)	교육부	79
7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현황	안전행정부	45
8	해양사고 상세 데이터('07~'13)	해양경찰청	44
9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위 명부	안전행정부	42
10	[공통] 지식재산권 통계	특허청	42

'14년 4월 오픈API Top 10

	오픈API명	제공기관	신청수
1	도로명 주소 조회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341
2	지번 주소 조회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118
3	동네 예보 정보 조회 서비스	기상청	80
4	대기오염 정보 조회 서비스	한국환경공단	66
5	버스위치 정보 조회 서비스	국토교통부	48
6	성남시 공영 주차장 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48
7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48
8	버스 노선 정보 조회 서비스	국토교통부	36
9	전국 공영주차장 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34
10	버스 정류소정보 조회서비스	국토교통부	32

13





병원정보 개방을 통한 치료 및 혜택 (메디라떼앱, 복지부)

✓ 58,000여개 병원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만족도 제고 및 민간업계 활성화(회원 50만명, '13년 매출 12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서비스('12년~)

As-Is (기존)

환자의 여건에 맞는 병원정보 제공창구 부재



To-Be (개선)

실시간 맞춤형 병원정보 제공으로 1차 의 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만족도 제고



서비스 전문적인 의료정보제공 및 앙방향 커뮤니케이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포인트 적립 기능 제공 현황 • 회원(50만명), 일방문자수(3만명) 메뉴 •병원검색, 이벤트, 병원리뷰 등



공공데이터 활용사례(스윗트래커 - 스마트택배)

세계 최초 택배 자동 배송추적 & 알림서비스(스마트택배앱, 우정사업본부)

✓국내 32개 택배사의 택배정보를 통한 택배 위치서비스 제공으로 택배이 용자 편의 제고(구글 100~500만건 다운로드, '13년 매출 2억3천만원)

우정사업본부 공공데이터 & 국내 민간 택배사 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서비스('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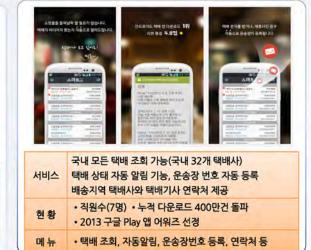
As-Is (기존)

각 구매 쇼핑몰에서만 위치확인가능



To-Be (개선)

모든 택배를 한곳에서 조회 가능하고 택배 상태 자동 알림으로 택배이용자 편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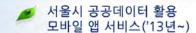


15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모두컴퍼니 - 모두의 주차장)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문제 해결 (모두의주차장 앱, 서울시)

✓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정보를 통한 주차장 검색서비스 제공 및 주차 공간 공유로 주차 문제 해결 및 이용자 편의 제고



As-Is (기존)

주차 공간은 부족하나, 유휴 주차장 정 보 부재



가깝고 합리적인 주차장 검색과 공유로 자 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 및 이용자 편의 제고



최적화된 주차요금, 주차 장소 등 주차정보 서비스,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민간 주차장 정보 공유

• '13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어워드 '혁신상' 수상, 현황 '으뜸앱' 선정

• 주차장 검색, 주차장 공유기능, 공유된 주차면 사용 메뉴



CONTENTS

활용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 1. 개방 정책 현황
- Ⅱ. 개방 추진 성과
- Ⅲ. 이용 활성화 계획 및 협조사항





현장 중심의 정책

■ 원스톱 서비스 체계 마련과 만·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및 유망기업 발굴

○ 직접 발로 뛰는 현장대응반(PSC)

- 15대 전략분야별 기관 및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현장대용반

(PSC: Problem Solving Coordinator) 운영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공공데이터 활용 협의체 구성

- 공공데이터 초기시장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포럼단' 구성
-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로 관련기관, 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전략분야별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 발굴 및 유망기업 지원 기업의 공공데이터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산업 활성화 도모

안전행정부

19

참고. 공공데이터 현장대응반(PSC) 사례

사례 1. (주) 케이웨더 - 한국환경공단 PSC

- ✓ 요청: '실시간 대기오염 관측정보'의 가공, 유통 허가 요청
- ✓ 중단통보: 활용기업의 해당 서비스 중 일부 데이터의 가공이 확인되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 ✓ 결과: 데이터 제공 및 중단 관련 분쟁조정 상담 과정 중에 PSC 현장간담회(4,24)에서 양자 간 조정 및 합의안 도출, 최종 합의(5.1)

〈주요 합의안 내용〉

- > (가공) 기관 약관에 데이터 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제공 데이터의 수정이 없는 범위에서 가공이 가능하도록 약관 수정
- > (유통) 데이터의 유통을 통해 향후 야기되는 문제의 법적 책임, 데이터 제공 관리의 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공급자 수요자 간의 별도 계약 필요
- ※ MOU 또는 계약서에는 컨텐츠 제공시 "자료출처 및 확정 전의 자료"임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수여부를 꾸준히 관리해야 함

사례 2. ㈜ SNBSOFT-CC코리아-한국환경공단 PSC

- ✓ 요청: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정보'의 원천 데이터 또는 법적 문제를 배제한 관리요소에 있는 정보 개방 요청
- ✓ 거부통보: "영업상 민감한 사항"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정보 공개 및 데이터 제공이 어려움
- ※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법 제정 이전에 지어져 '16~'18년 이후까지 유예기간을 둔기관 중신청 형태로 진단 및 개선 서비스 제공 목적
- ✓ 진행(PSC 간담회, 5.20): 법적 문제를 배제한 환경안전진단 우수 사업체 개방 방안 도출, 검토 후 후속 진행 예정

(PSC 간담회 내용)

- 🥕 '16년 이후 환경안전 관리기준의 의무화가 시행 되면 공표 조항은 必히 법에 추가
- 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자 중 기준을 상회하는 우수 사업체가 개방에 동의한 경우 대상만 개방하는 방안
- ※수요가 측은 서비스 시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 법적 문제 해결

안전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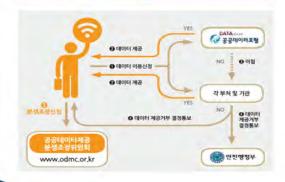
데이터 제공 기반 확보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중단 발생시, 국민들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의 이용 권리를 구제받도록 만든 제도

*공공데이터 제공법(제29조)에 의거 공공데이터제공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 및 절차

(신청인)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60일이내)

- → (위원회) 조정부 구성 및 분쟁조정(합의권고또는 30일 이내조정안제공)
- → (신청인)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공공기관은 조정안 수용 원칙)

- → (위원회.신청인) 수락한 경우 조정서 작성(재판상화해와동일효력)
- → 조정안 수락(완료)
- *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거부



21



참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현황 및 분쟁조정 사례

✓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현황(총 33개기관 84건, 13.11.6~14.4.29, 약 6개월)

신청 내용	신청 건수 (%)	제공 거부 사유		
저작물 원문 요청 및 영리적 이용 (출판) *택서, 연구 보고서등	17건 (20%)	비상업타 기관	관련 제3자의 권리 침해 적 이용만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 기준 란의 콘텐츠를 서비스만 하는 형태로 3 권한 없음	
정보 DB 요청 (52건 (62%)	데이터에 대한 처분 권한 부재	 ● 데이터 소재 및 제공기관 오인 ● 타 기관 및 업체의 DB를 제공 받아 서비스해 DB 제공권한 없음 	
		데이터 신뢰성문제 로 개방 불 가		
		현재 불가, 향후 개방 예정	 통합DB로 요청한 DB만 추출불가 시스템 개편 중 DB 품질, 표준화 등 정비 필요 	
		비공개대상 정보	が 개인정보포함 및 비공개대상 정보(형사사법마)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	
기타	15건 (18%)	요청데이터를	별도DB로구축해관리하지않고있음	

사례 1. '발간 제작물의 제공거부' 분쟁조정

✓ 제공신청 : 기관에서 발간한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원문 제공 요청

✓ 거부통보 : 저작권 침해 및 영리적 사용 금지라는 내부 방침에 의한 제공 거부

✓ 조정결과: 전자 책 제작 및 출판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 해당 공공데이터에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피신청인이 직접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민간이용이 가능 하도록 조정

사례 2, 개별기관소유의 도로이 정표 정보제공거부 분쟁조정

- ✓ 제공신청 : 도로이정표 정보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원데이터 제공 요청
- ✓ 거부통보: 도로이정표 정보는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민간 도로관리기관 등 개별 기관에 처분권한이 있어 제공거부
- ✓ 조정결과: 국토부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로, <u>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방</u>할 것으로 조정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사항

✓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데이터 제공 협조

기관 협조 사항

-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
- 제공목록에 없는 데이터에 대해 민간이 별도의 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도 영리적 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개방해야 함
- · '기관의 처분권 부재, 신뢰성 부재, 향후 개방 예정' 등 부당한 사유로 민간의 데이터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유형별제공방안

- 기관의 처분권 부재
- ▶ 이용자가 관련 기관에 따로 제공신청을 하는 불편이 없도록, 피신청기관이 처분권 소유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
- 데이터 신뢰성 문제
- ▶ 신뢰성 문제는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 단,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등, 기관장의 제공중단 가능(법 제28조)
- 현재 개방 불가하나, 향후 개방 가능한 경우
- 거부가 아니라, 제공 시기를 명시하여 제공 통보한 후, 개방이 가능한 시점에 즉시 제공

23



공공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

('14. 5. 1) 재정전략회의 中 VIP 당부 말씀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민간에 맡겨야 할 부분은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정부는 원시 데이터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 직접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됨

민간 영역 침해 서비스 사례

•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정부·공공 서비스 사례

구분	서비스 채널	서비스 내용	유통 가격	연간수 입 (13)
공간 정보	공간정보오픈 플랫폼 (V-WORLD)	2D/3D 지도, 용도 지역도, 개별공시지가, 건물정보 등(25종)	실비범위 내 기관이 정함	15억
기상 정보	종합기상정보 시스템 동네예 보서비스등	관측자료, 기상관측 정보처리 분석자료, 예보 및 특보 등(31종)	건당 월 1~15만원	1.3억
특허 정보	특하행정시스템, KIPRIS, KIPRIS Plus 등	산업재산권정보, 한국 전통지식정보, 등록 디자인등특허정보(78종)	건당 175~ 2,520천원	2.5억

- 정부·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직접 제공 현황 (13.12월 현재)
- 모바일 공공 앱 서비스 978개 기관, 총 1,167개

공공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추진계획

- (원칙)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 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 서비스 개발・경쟁
- ✓ 공공의 서비스 제공 여부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 기준 제시
-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개발예정) 공익성, 수익성 등 검토·후 및 (医개발) 공공데이터 제공(raw data) → 민간 시장 형성 → 민간 이양
- (절차) 공공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
- ✓ (의견수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 기업 등 전문가 의견 반영
- ✓ (의견수염) 등등대이디신탁취전적, 로딘 기급 등 단단 * 서비스 영역설정을 위한 합동 토론회, 전문가 용역 수행 등
 ✓ (관계부처 협의) 기재부·미래부 등 관련 부처 역할 정립
- (기재부) 예산 편성 전에 정부 서비스 제공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미래부), 유사 서비스 개발 현황 분석 등 관련 산업계 동향 제공

개선안마련 (가이드라인) 침해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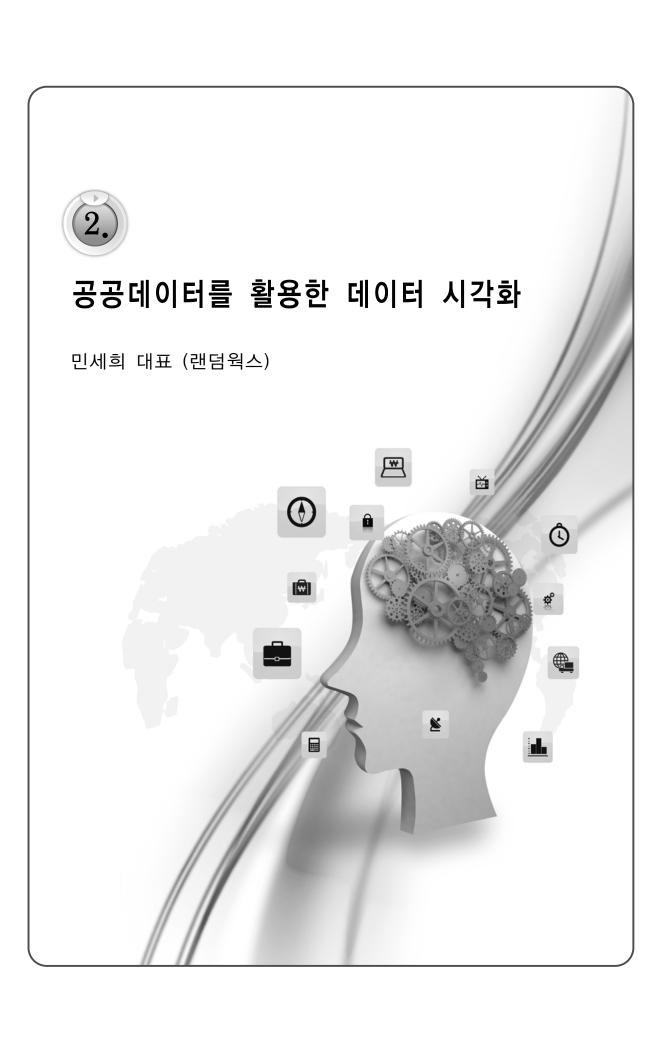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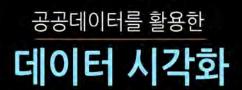
가이드라인 확정·보급(6월) 및 '15년도 예산 심의(7~8월)에 반영











r a n d o m w a l k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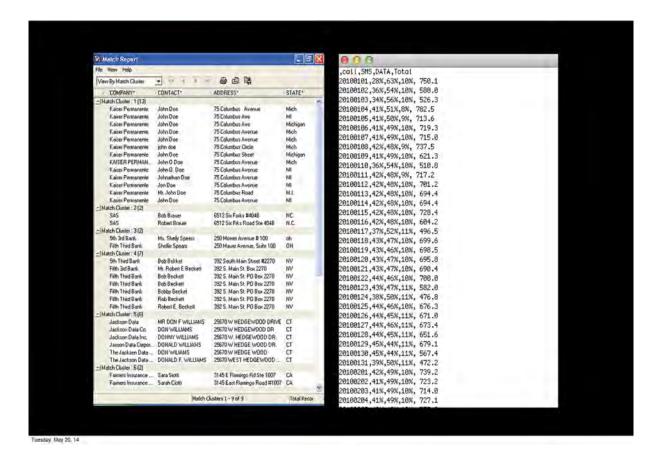
Tuesday May 20, 14

데이터?

(형태적으로) 정보화 되기 이전의 자료 형태

Tuesday, May 20, 14





데이터? (의미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주는 팩터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 생산자, 수급자, 소비자등 데이터에 연결된 주체들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유용하며, 의미있게" 연결하여 필요한 환경에 적용 시키는 디자인

Tuesday May 2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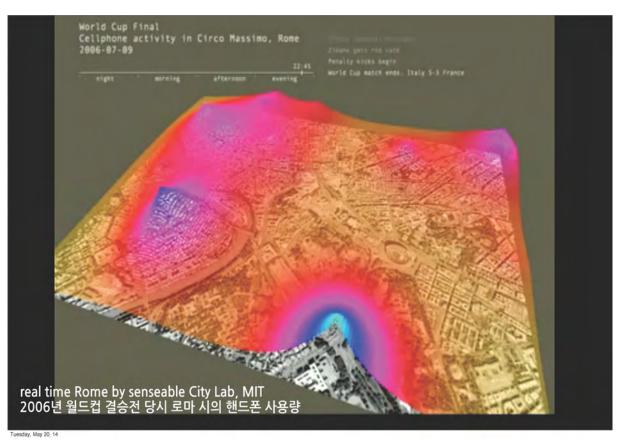
why?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목적

데이터 시각화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속의 또다른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를 야기 시키기 위해서,

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포메이션

거주자 생활 에너지(물,가스, 전기) 사용에 따라 변하는 건축물

process

거주자의 에너지 사용 습관 인식 시스템 거주 공간은 거주자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거주 공간의 크기가 변한다.



공공데이터의 시각화?

공공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공공데이터 = 가능성의 소스



공공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시각 및 문화 컨텐츠화된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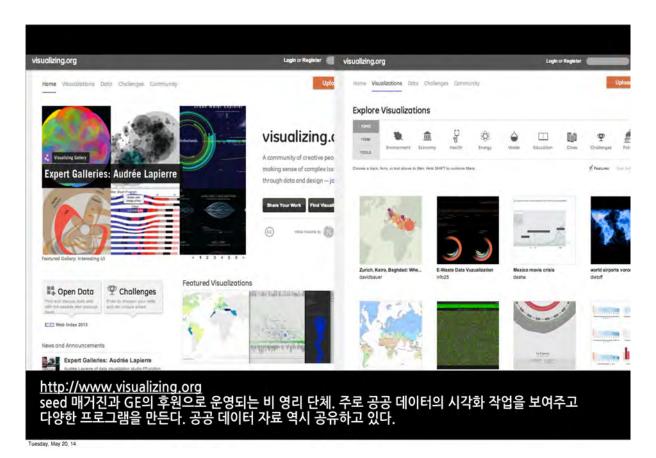
공공인식과 공공 행동의 변화











City Forward Now you can upload and visualize your own datasets on City Forward! Discover what other City Forward users are doing and explore the data catalog. Explore City Stories **Data Catalog** Create View what other City Forward Enter keywords to quickly find Browse available datasets. users have already created. content. Collaborate Leam browse Search City Forward http://cityforward.org/ IBM의 지원으로 도시별로 구분된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이해 및 시각화.



공공 -데이터 → 전달자들 → 일반시민 정부.기업. 민간이 개방한 데이터들 개발자, 컨텐츠 제작자 매체 (개인 혹은 공공매체) 직접 수요자들

Tuesday, May 20, 14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개방된 데이터

중간 전달자들

개발자, 컨텐츠 제작자 매체 (개인 혹은 공공매체)

공공집단의 특성에 대한 고민, 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고민, 매체에 대한 고민, 표현 (혹은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전달

Tuesday, May 20, 14

데이터 시각화란

정보화 되기 이전의 상태, 즉 자료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를

- a) 어떤 종류를 모을 것인지,
- b) 누구에게 보여 줄 것인지,
- c) 시각화 이후 어떤 결과를 유도 /기대 할 것인지를

"정확하고, 유용하며, 의미있게" 설계/디자인 하는 작업

공공인식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서울시 재정 정보 시각화

Tuesday May 20, 14

서울시 재정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컨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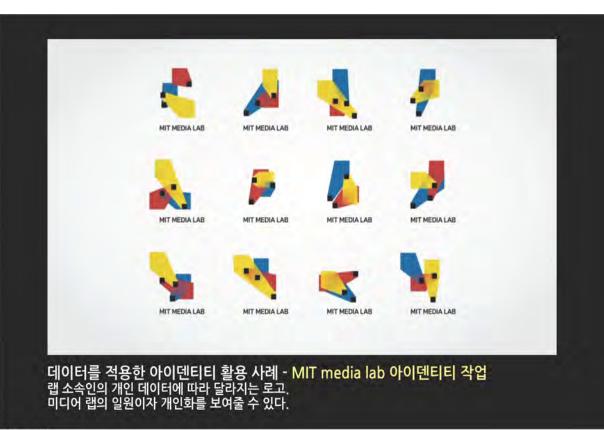
도시의 지출 정보는 그 도시의 지향점과 현재를 보여준다.

" 서울시가 오늘 하루 동안 지출한 금액과 내용은?" 서울시민들의 예산 사용에 관한 인식과 이해 이를 통한 서울 시민들의 시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증가

Tuesday May 20, 14



서울시 지출내역에 따라 변하는 로고 예시 오늘의 서울시 2012.09.03 황목 Seou 666 2012.09.03 seoul 온라인 로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지출 내역 데이터에 의해서 실시간 변하는 온라인 로고 애플리케이션은 서울시의 지출 내역을 패턴화하여 보 서울시 홍보 상품에 적용 가능한 예 지출 내용에 따라 변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서울시 홍보상품에 적용, 활용을 확장할 수 있다. 여준다. Tuesday, May 2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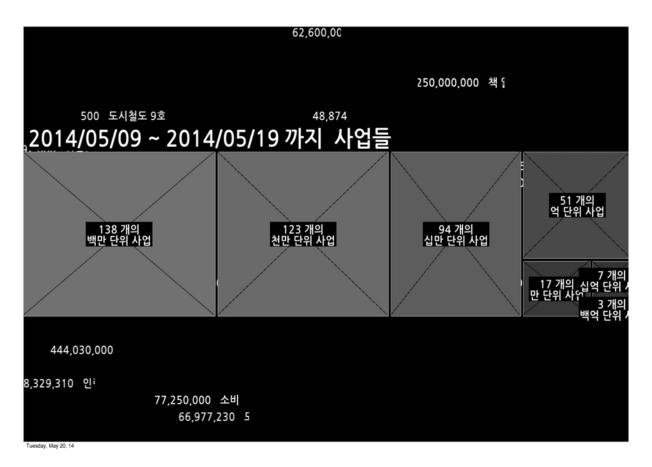
2013/05/31 오늘 서울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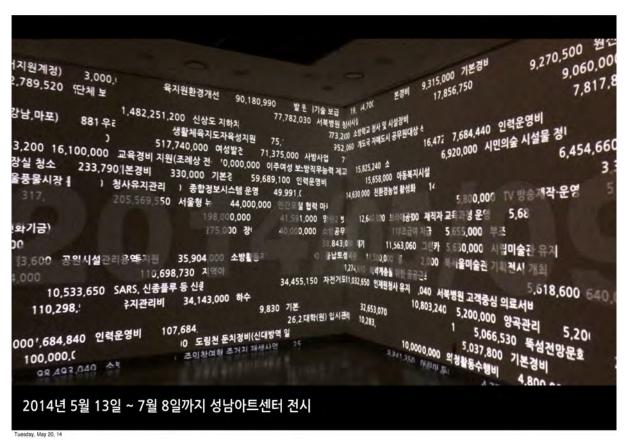
했습니다.

Tuesday, May 20, 14









공공인식을 위한 공공 데이터 시각화, 가장 적합한 매체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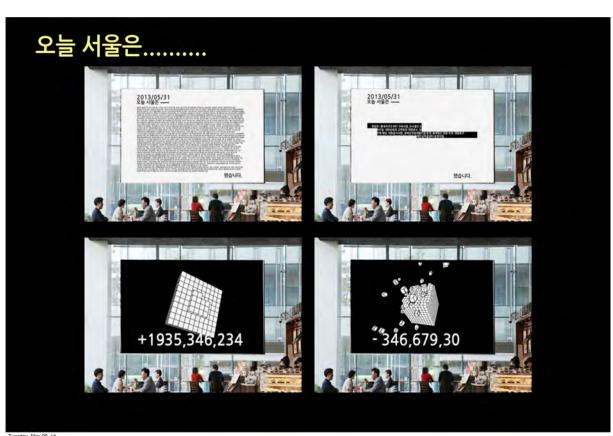
Tuesday May 20, 14

찾아가야 하는 정보와 찾아오는 정보의 차이

Tuesday May 20, 14







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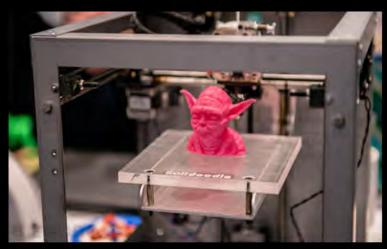




Tuesday, May 20, 14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은 매체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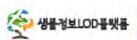
서울시에 출몰한 야생 동식물, 희귀동물, 생태지역 동식 물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데이터시각화, 증명이 아닌 참조 reference, not evidence

public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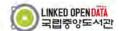
더 나은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까지 연계













Linked Open Data

주식회사 리스트 대표이사 오원석

1, LOD 소개 1, LOD 소개 2, LOD 활용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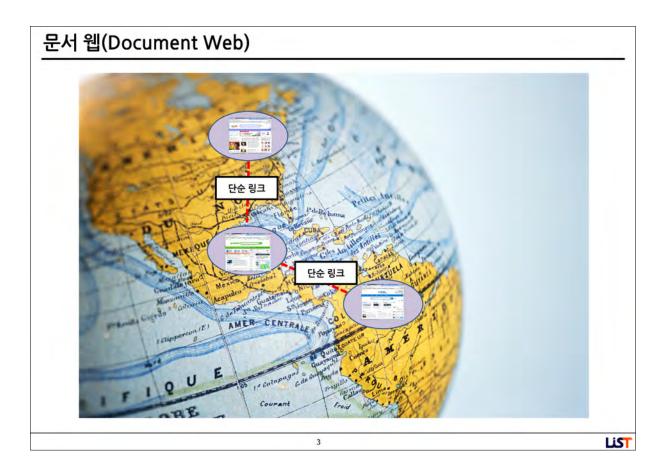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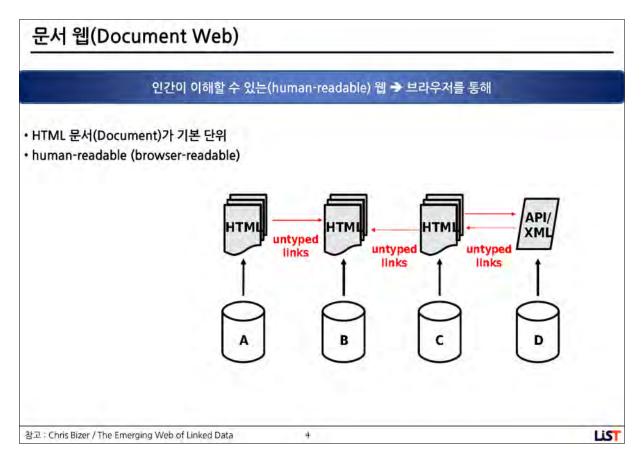
World Wide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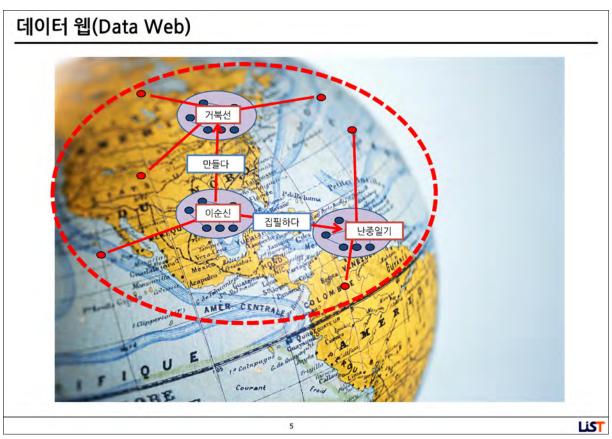
is a system of interlinked hypertext documents accessed via the Internet. With a web browser, one can view web pages that may contain text, images, videos, and other multimedia, and navigate between them via hyperlinks.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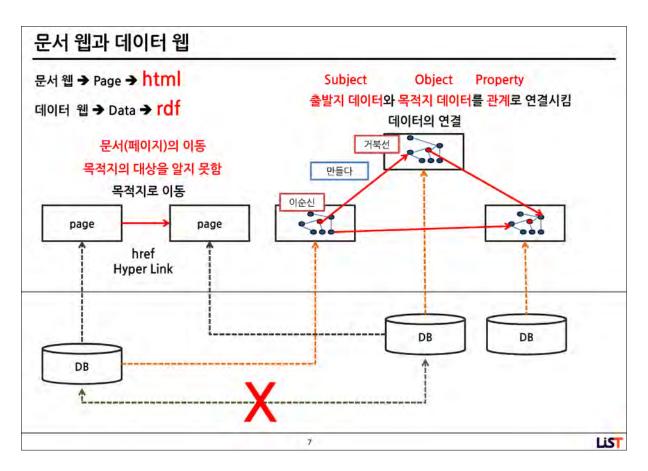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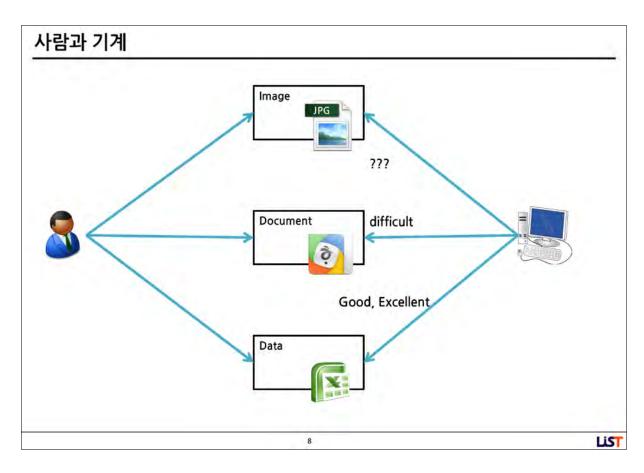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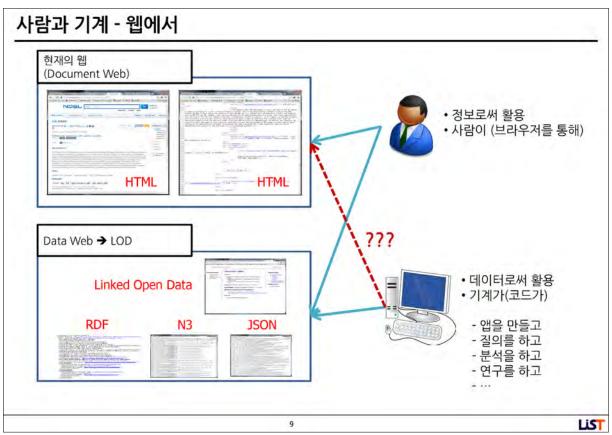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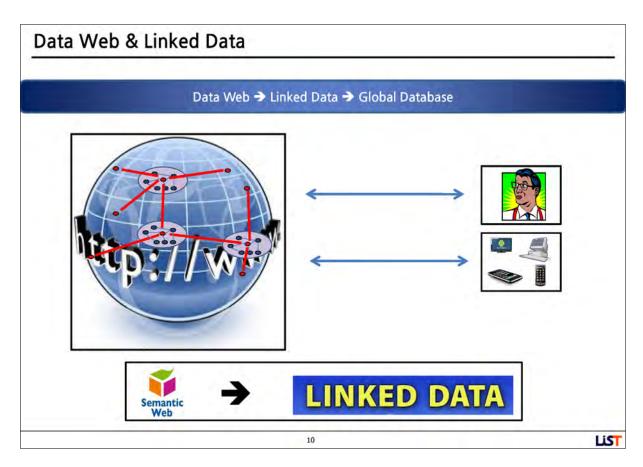
데이터 웹(Data Web)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 할 수 있는(machine-readable) 웹 • Data가 기본 단위 · machine-readable -> parsing Thing typed links typed links typed links 참고: Chris Bizer / The Emerging Web of Linked Data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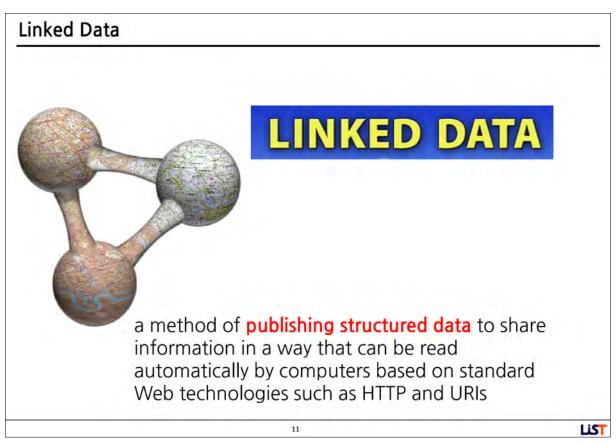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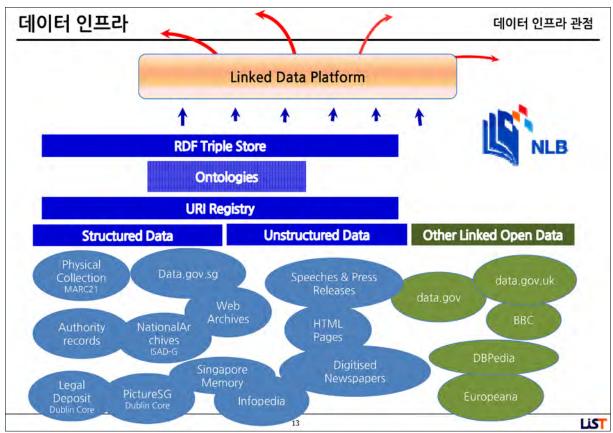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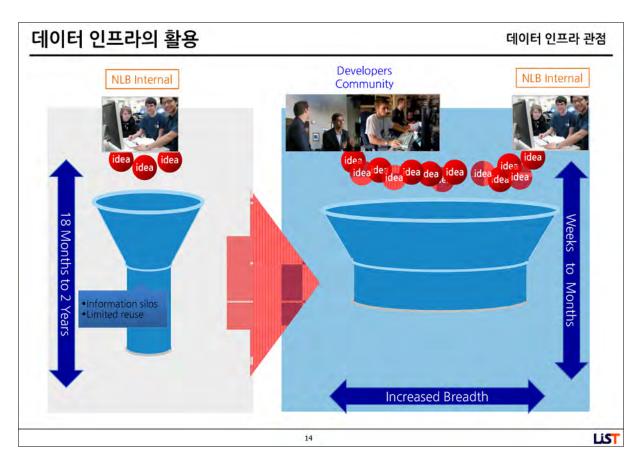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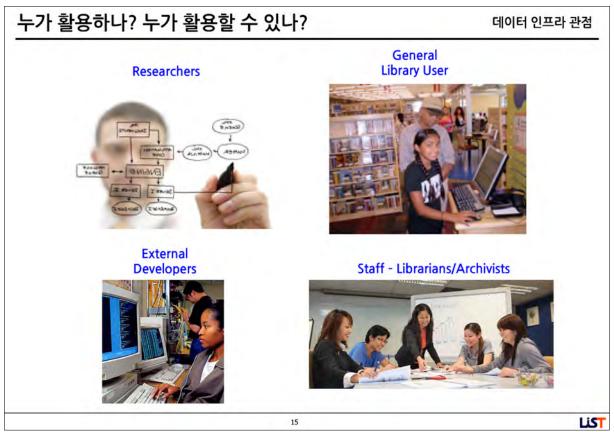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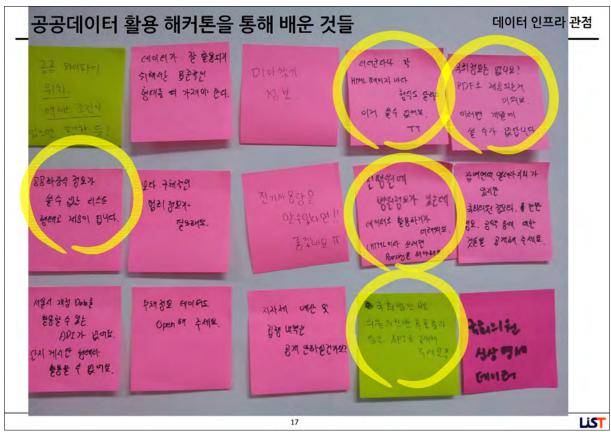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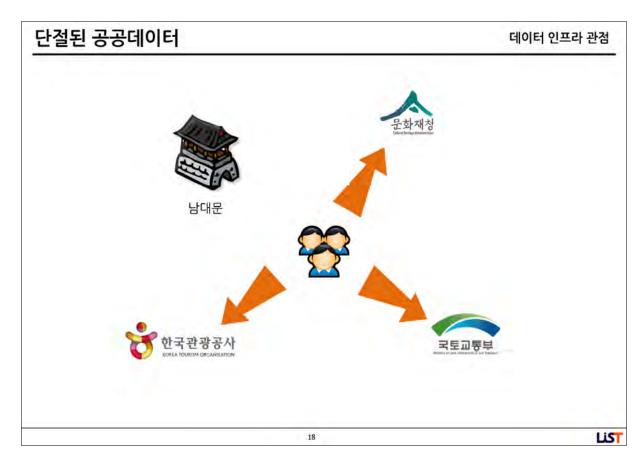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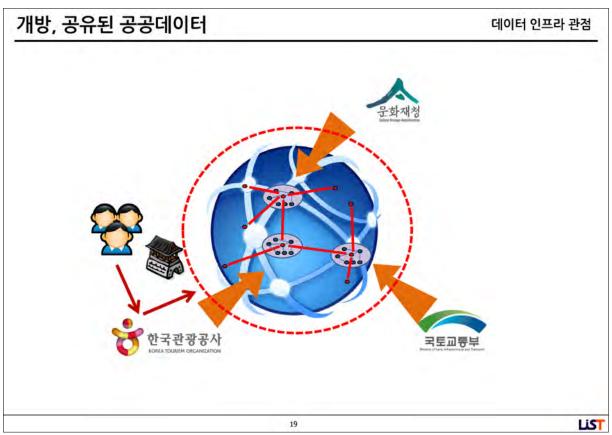












아이를 출산했는데 무엇을?

데이터 인프라 관점

- 어디에서 찿아 봐야 할까요?
- 중복 정책은 없을까요?
- 한눈에 볼 수는 없을까요?
-









20 **LIST**

창업을 하고 싶은데 관련 정보는?

데이터 인프라 관점

- 어디에서 찿아 봐야 할까요?
- 중복 정책은 없을까요?
- 한눈에 볼 수는 없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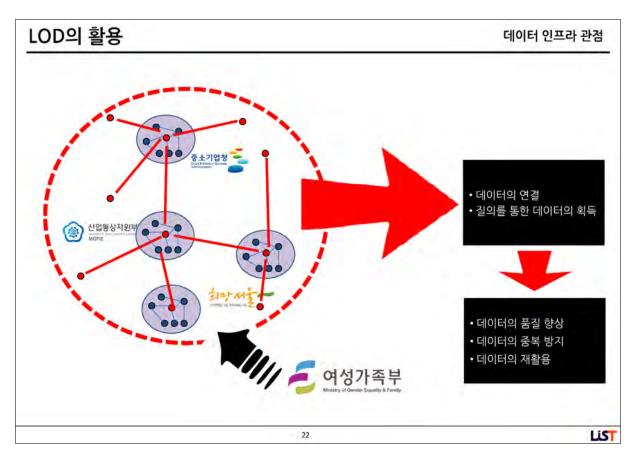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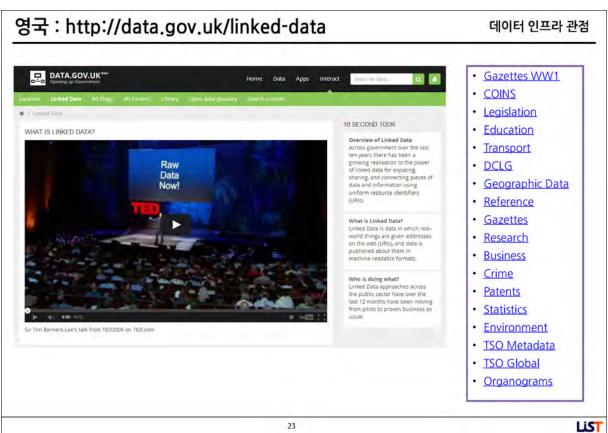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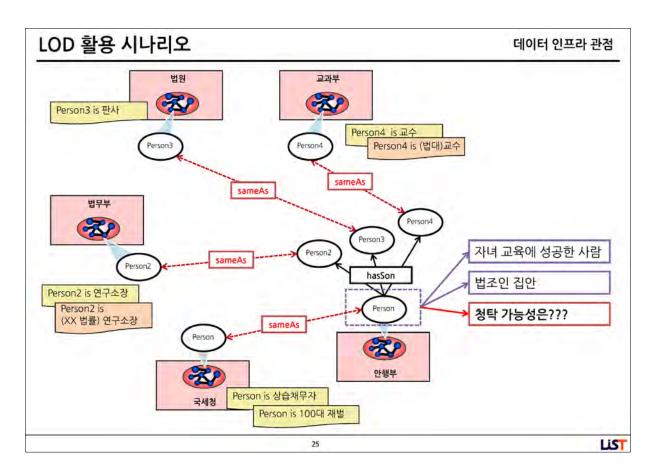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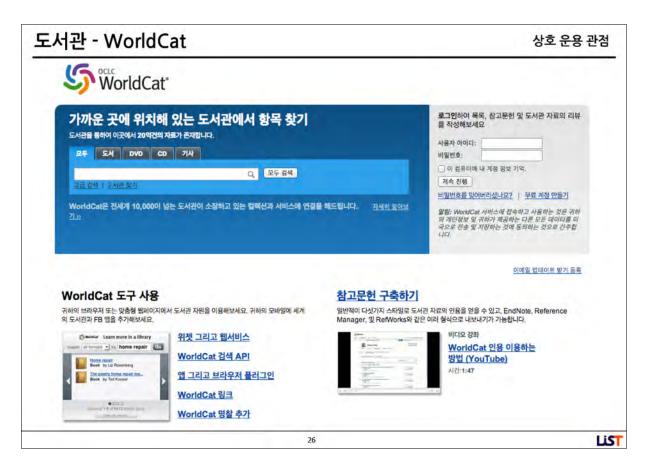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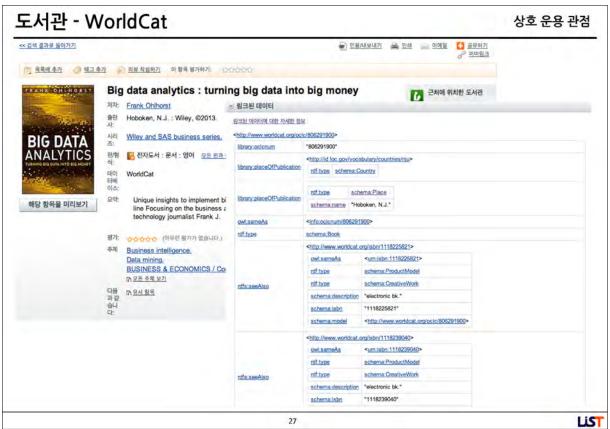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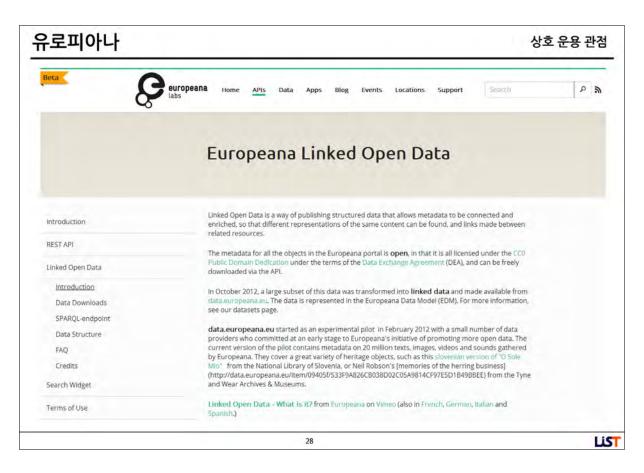
OD의 활용	데이터 인프라 관점
LOD는	또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를
보다 풍요롭게	데이터 관점에서 개방, 공유, 연결하여
서로 같이	재활용하기 위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방법을 제공한다.
방법이고 환경이며 기술이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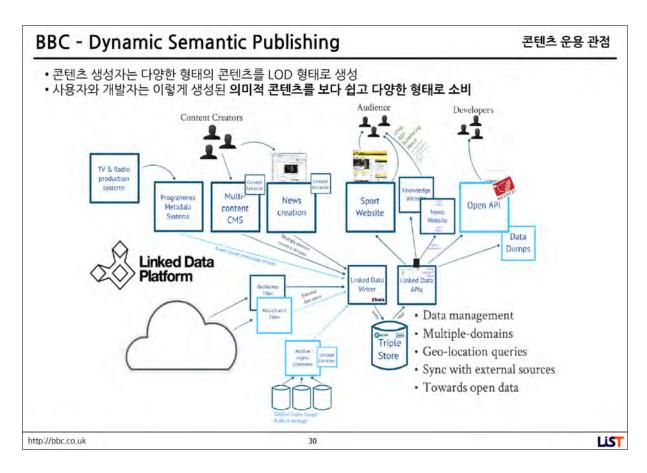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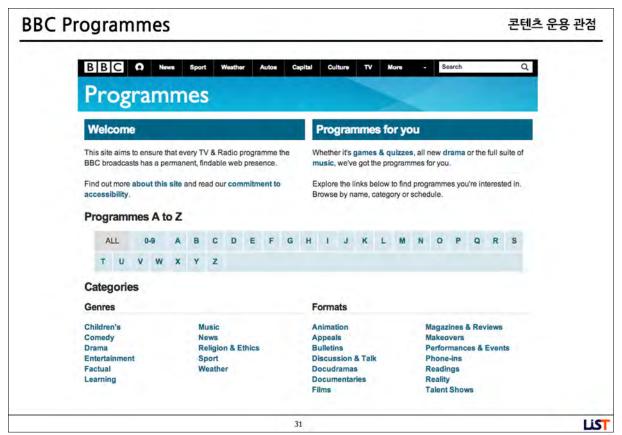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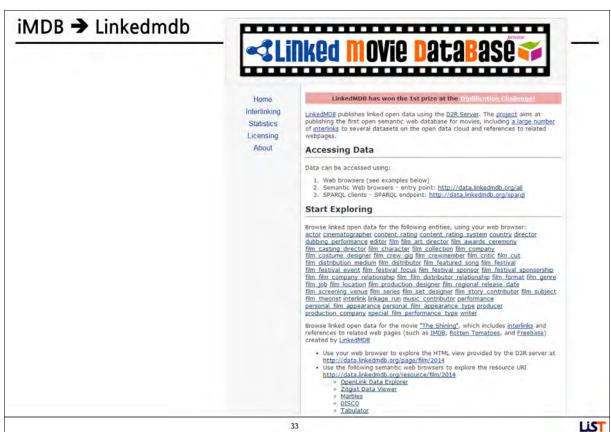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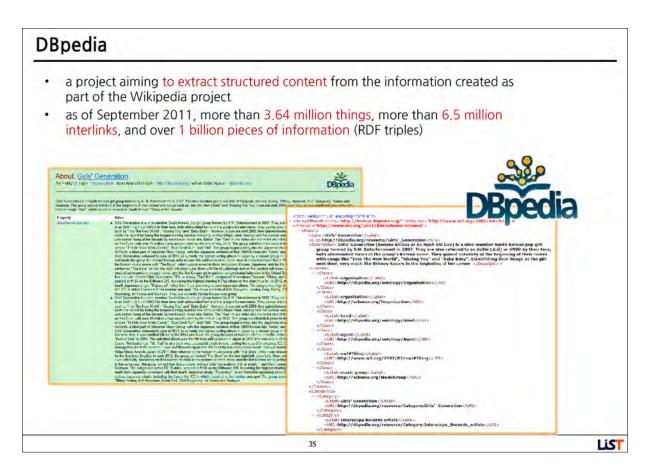








VIAF: 이외수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Search Search Terms: Select Field: Select Index: All Headings ▼ All VIAF ▼ 이외쉬 Search ■ Selected Titles 1. Selections. (2) 2. Maldődűmi űi kyőul such'őp (2) 3 III Yi, Oe-su, 1946- III III 3. Hunjang : Yi Oe-su chungp'yôn sosôl. (2) VIAF ID: 28620430 (Personal) 4. 흐린 세상 건너기 孝 外界 감성 모자이크 (1) Permalink: http://viaf.org/viaf/28620430 5. 항급 비늘 이 외수 장편 소설 (1) 8. 허수아비 사랑 .최 준선 칼라 靜高集(1) ¹⁰⁰ 7. 한 다발 의 시린 사랑 얘기(1) ¹⁰⁰ Preferred Forms 8. 하막하막 이 외수 의 생존법 (1) 🥌 ONE 3 100 1 ta Yi. Oe-Su td 1946-9. 하약하약(1) ¹⁴⁸ 10. 甚美 술잔 나비:후 外秀 시집 (1) ¹⁵⁸ 100 1 _ ‡a Yi, Oe-su, ‡d 1946-Selected Co-authors II 100 1 _ ta Yi Oe-su td 1946-Countries of Publication (1) Publication Statistics = About http://viaf.org/viaf/28620430/ History of VIAF ID:28620430 (5) 34 LIST



GeoNames

- a geographical database available and accessible through various web services,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 over 10,000,000 geographical names corresponding to over 7,500,000 unique features



Life Science: LinkedLife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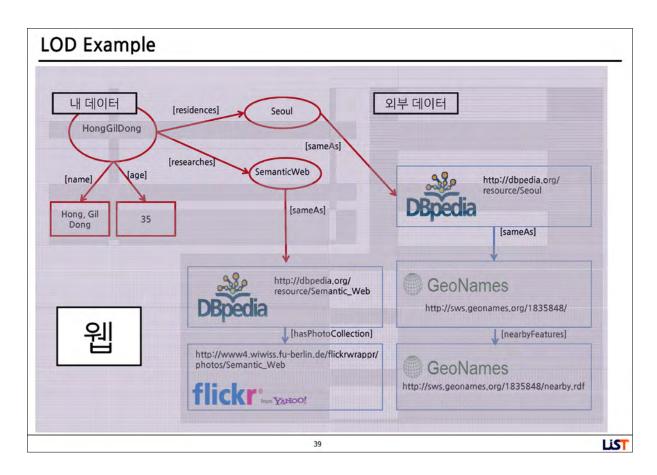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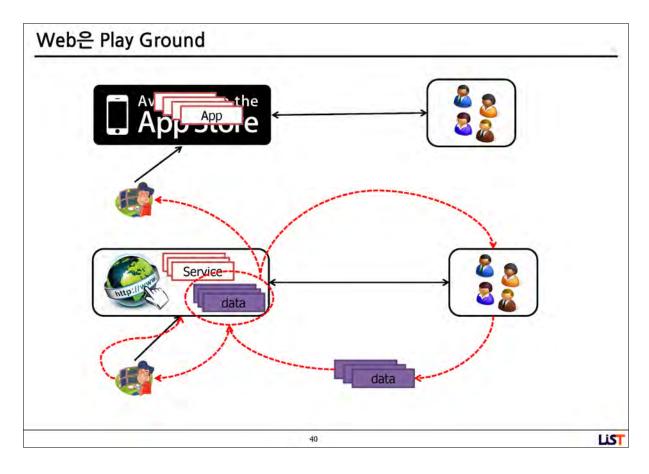
- · Linked Life Data Platform
- 다양한 이형의 데이터셋을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 의학, 생명공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RDF화
- 다양한 데이터셋 간의 의미적 연계(semantically linking)
- HTTP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 목적
 - 서로 다른 이형의 데이터의 정보들을 서로 연결(interlinking)함으로써 시맨틱 웹 기술의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고
 - 연구하고자 하는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view를 제공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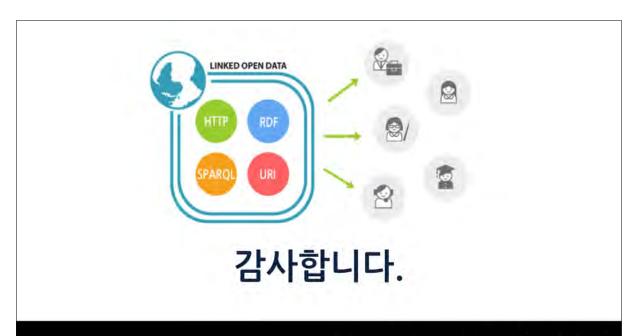
Life Science: Bio2RDF • Biological knowledge discovery를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 silos한 Biological 데이터를 linked data로 구축하여 서비스 **Bio2RDF Datasets** Download URL # of triples Entrez Gene N/A 4/10/2012 Gene Ontology Annotations GOA 8498693 2/27/2012 1193998 0.2537 4/10/2012 HUGO Gene Nomenclature Committee HONO 3107460 0.0928 4/10/2012 International Protein Index 2574964 0.0769 5/10/2012 **ProClass** N/A N/A 429347860 12.8161 3/4/2012 Refindex Refindex Refindex 18931713 4/10/2012 PharmGKB PharmGKB **PharmGKB** 27379376 4/10/2012 PubMed N/A 1.4980 N/A 67421619 4/10/2012 Mouse Genome Informatics MGI MGI 2454586 0.0733 4/10/2012 NCBO 31764669 National Center for Biomedical Ontology 0.9393 3/19/2012 Online Mendellan Inheritance in Man OMIM 185175 0.0055 3/5/2012 Saccharomyces Genome Database 3/5/2012 Toxicogenomics Knowledge Base 45182281 1.3360 2/27/2012 2487870559 73,566 4/10/2012 38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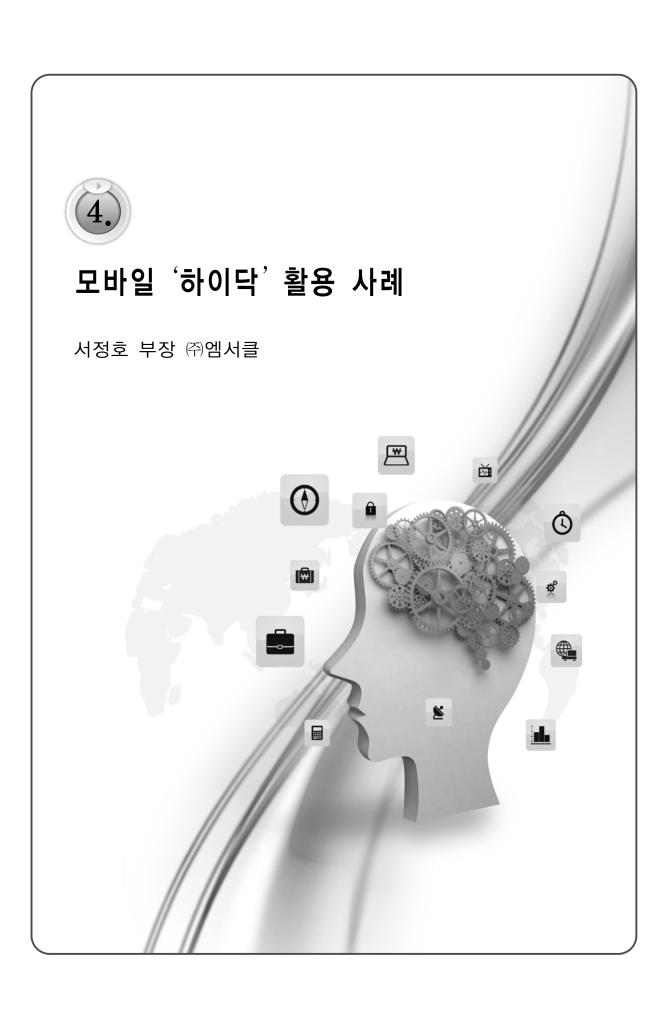






주식회사 리스트 대표이사 : http://li-st.com 대한민국 대표 LOD KDATA : http://kdata.kr 새주소 기반 Linked Open Data-주소데이터 : http://jusodata.kr

codalida@gmail.com , ceo@li-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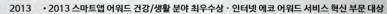
IT와 헬스케어가 융합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엠서클'

엠서클은 1999년 설립하여 2000년 건강의학 포털 사이트 하이닥을 론칭, 13여 년 간 50만 페이지 분량의 건강의학 전문 콘텐츠를 확보, 국내 온·오프라인 건강의학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며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통한 가치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회사명: (주) 엠서클 | 대표자: 유현오
- 사업자 등록번호: 120-86-10499 | 법인등록번호: 110111-2054297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3-1 4층

의료전문 포탈 'Hidoc'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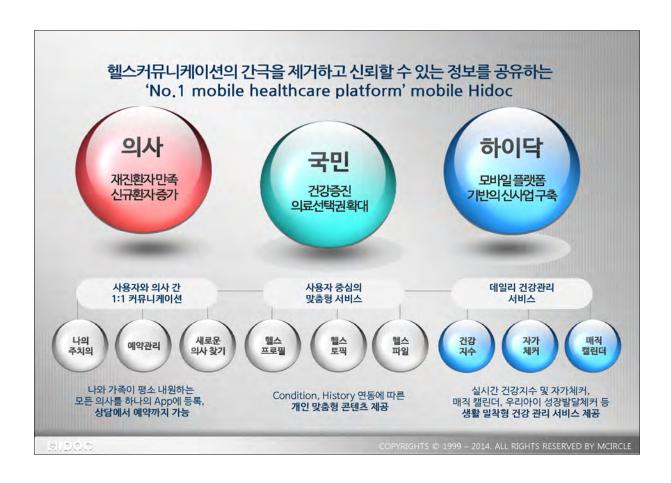
건강의학포탈 하이닥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엠하이닥 | 네이버 지식iN 건강상담 | 메디컬 영상 제작



-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획득
- •네이버 건강 암 프로젝트 콘텐트 공급
- 동부화재 및 LIG손해보험 콘텐츠 공급
- 네이버 뉴스 제휴
- 2012 제 3회 인터넷 에코 어워드 의료 전문분야 대상
 - 2012 스마트앱 어워드 건강의료 부문 최우수상 & 우수상
 - 제 9회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 공공의료분야 우수상
 - 미디어 다음(Daum) 뉴스 콘텐츠 제휴 CP 입점
 - ZUM인터넷((주) 이스트소프트) 뉴스 콘텐츠 제휴 CP사 입점
- 2011 2012 웹어워드 코리아 의료정보전문분야 대상 수상
 - 2011 인터넷 에코 어워드 보건의료정보분야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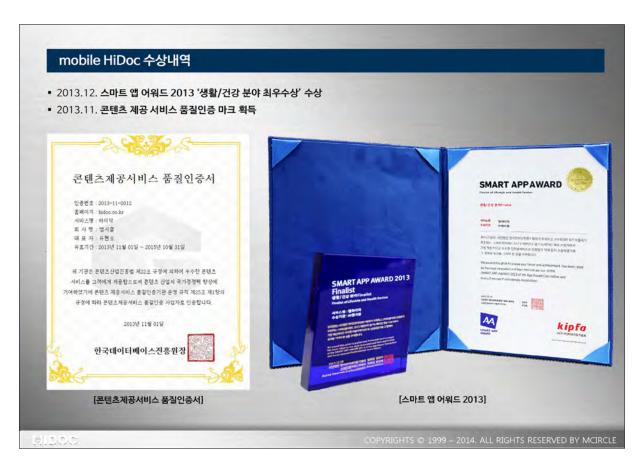
M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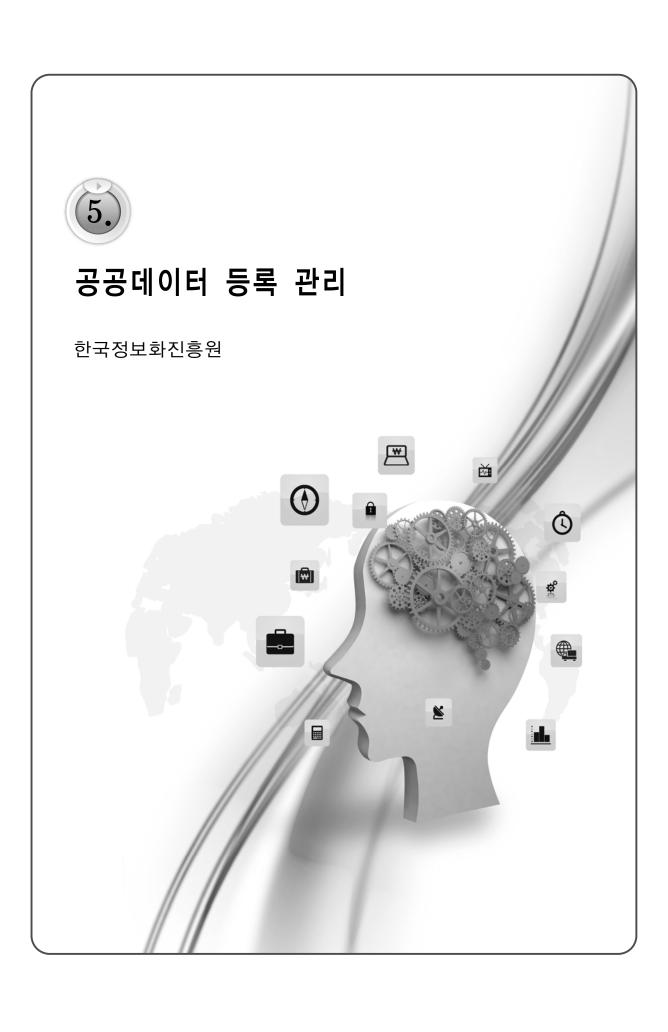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지수' 서비스 후 일 평균 다운로드 2배 증가, PV 10배 이상 상승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가이드

2014. 4.



안전행정부



목 차

I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개요 3
Ⅱ.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유의사항6
Ⅲ.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요령8
※ 미정비 목록 확인 방법 16
※ 반려사례 및 반려사유 확인 방법 22
IV. 행정 사항 33
< 참고자료 >
붙임. 공공데이터법 주요 개요 33
붙임.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기능(위젯) 다운로드 방법 36

Ī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개요

1 개요

-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은 생성 또는 수집·취득 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 정부장관에게 등록
 - 공공데이터 목록의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
 -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는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ownership)을 가진 해당 기관이 직접 수행 (소관부처 및 지자체의 산하기관 데이터 등록 및 중복등록 금지)

◈ 참고 ◈

- 법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 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 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 참고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정의) 제10호."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③ 목록등록 방법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로그인후 관리 자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위젯(widge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등록 [불임2참조]
 - ※ 위젯 기능 보완으로 기 설치 되어 있는 PC에서도 반드시 새로 다운로드 받아 재설치
 - ※ 위젯 다운로드 불가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
 - ※ 공공테이터 포털 접속 불가시 호환성 설정 필요 (도구→호환성 보기체크 없앰→ 호환성보기 설정→모든 웹사이트 표시 체크 없앰→닫기)

④ 기관별 조치(협조) 사항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설명서에 따라 기관보유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시된 요령에 따라 등록 : '14. 4. 14(월) ~ 4. 25(금)
- ① 공공데이터 목록등록시스템에 기 등록된 각급 기관별 목록을 확인하여 등록 목록이 있는 경우는 수정 · 보완 등 목록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고, 등록된 목 록이 없는 경우는 신규로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
 - ②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목록 재등록
- ③ ①,②번 작업 완료 후, 제공(개방) 목록인 경우는 반드시 실제 제공 데이터를 함 께 등록
 - ④ 포털내 제공중인 데이터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및 제공공공 데이터 등록서 항목을 기준에 부합되도록 반드시 수정·보완 실시

- ⑤ PDF 파일 등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 변환, 추출 등이 불가능한 데이터 형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예; 아래한글로 생성-> hwp확 장자 포맷으로 제공, MS엑셀로 생성-> xls 확장자 포맷으로 제공 등)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10개 항목) 및 제공공공데이터 등록서(13개 항목)의 필수 항목 미 기입 후 등록 요청 시 반려 처리 됨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입력화면 】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입력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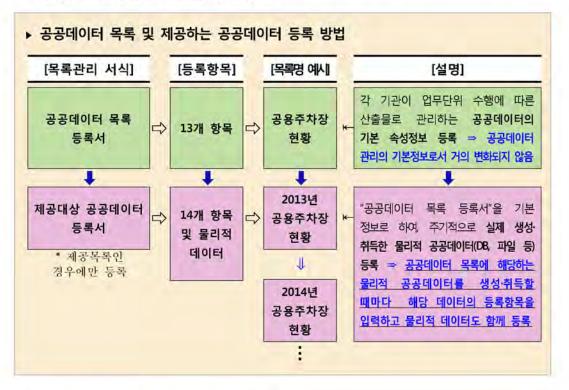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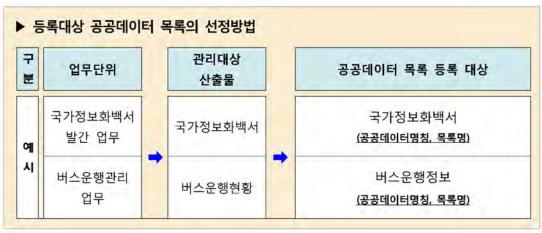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유의사항

① 목록명(공공데이터명) 선정기준

O 각 기관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단위의 산출물로서 생성·관리하는 공공데 이터를 목록 등록대상으로 선정·등록





② 공공데이터 명칭 선정 예시

○ 공공데이터 명칭의 제목(목록명)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고 의미 전달력과 제공에 따른 활용성이 높은 형태로 목록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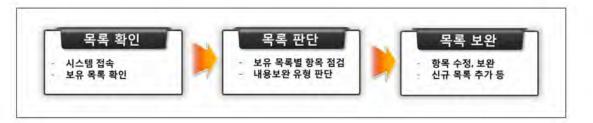
부적합한 목록예시		적합한 목록예시
연구관리정보	⇒	· R&D 연구과제 정보, R&D 연구성과 정보 등
교통정보	\Rightarrow	· 시내버스 운행 정보, 시외버스 운행 정보 등
건축정보	⇒	·건축물 인허가 정보, 토지 대장 정보, 건축물 도면 정보 등
문화관광정보	⇒	· 문화재 정보, 문화시설 정보, 숙박시설 정보 등
식물정보	⇒	• 식물도감 정보, 식물표본 정보, 식물분포 정보 등
영화정보	⇒	· 영화 시나리오 정보, 영화 상영 정보 등

O 사전공표정보 등 개방효과가 극히 미약한 정보는 목록 등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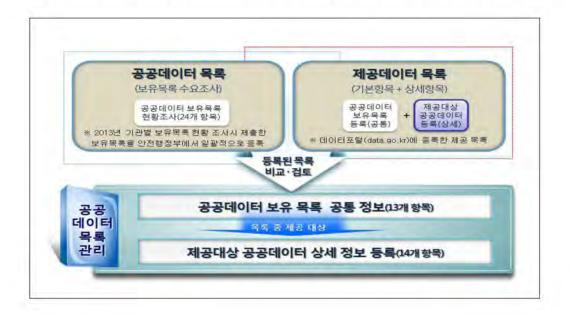
구분	정보 예시	
기관 운영・홍보	조직도, 게시판 자료, 보도자료, 안내전단, 약도 등	
일상 행정처리 문서	계획·결과보고 문서,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문서 등	
인사정보	포상자 현황, 국내외 출장자 현황	
정책문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반보고자료(주간, 월간)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요령



- 공공데이터 목록은 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등록서(보유현황)와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구성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서를 중심으로 기 제출한 보유현황 자료에 대한 목록 정보의 수정 · 보완
- 기존 보유현황 조사시 제출한 목록을 시스템에 일괄 등록한 목록 (안행부등록)과 기관(직접)등록 목록(포털 제공데이터)의 중복성 검토



①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화면 이해

- ① 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위젯 로그인 → 화면왼쪽 '목록 등록' Click/기관, 분류, 등록일 자동설정 (defult)/ 검색Click → 해당기관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 검색
 - ※ 위젯 기능 보완으로 기 설치 되어 있는 PC에서도 반드시 새로 다운로드 받아 재설치



【기관 전체목록조회 화면】

- 공공데이터 명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목록명
- 등록유형
- · 안행부 등록 '13년 조사 결과를 일괄 등록한 목록
- · 기관(직접)등록 기 등록하여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목록과 데이터
- 제공대상 유무 : 제공, 미제공, 부분제공 등 제공 여부
- **포털제공 여부** : 포털(www.data.go.kr)을 통한 제공 되는 데이터
- 향후 제공년도 : 현재 미제공이지만 향후 제공하거나, 제공대상이지만

별도의 사유로 인해 향후 제공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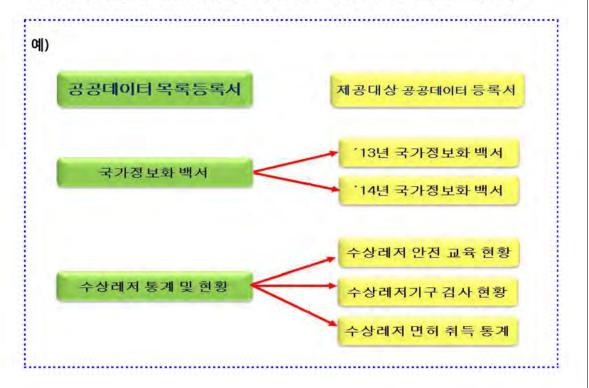
- 진행단계 : 공공데이터 명 중복 시 삭제 요청 현황
- 등록자/수정자 : 공공데이터 명 등록자와 수정한 사람의 이름
- **등록일/수정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등록일과 수정일



② 공공데이터 목록과 제공데이터와의 관계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는 1:N의 관계, 하나의 목록 등록서와 다수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로 등록

즉, 기 등록된 하나의 목록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제공데이터를 등록



② 공공데이터 목록 정비 절차

1단계 공공데이터 목록의 중복여부 체크

①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왼쪽 화면 '목록 등록'에서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공공데이터명간 중복 여부 체크

② 안행부등록의 공공데이터명 간 중복여부 체크

- 중복이 있는 경우 ⇒ 중복 공공데이터 목록 삭제 요청 (공공데이터명 Click 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하단의 삭제 버튼 Click)
- ⇒ 명칭만 중복인 경우와 실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서가 중복인 경우를 확인하여 실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서가 중복인 경우 삭제 요청 (명칭만 중복인 경우 명칭 변경)
- ※ 기관별 목록데이터 개방계획 목표치는 유지됨을 감안하여 정비 조치



【안행부등록 목록의 중복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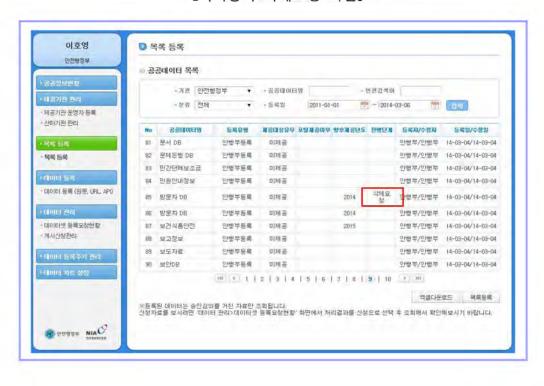
※ '엑셀다운로드' Click시 해당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일괄 다운로드 받아 공공데이터 목록 세부 항목 중복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삭제사유(중복) 선택 화면】



【목록중복 삭제요청 화면】



- ③ 안행부등록과 기관(직접)등록 간 공공데이터명 중복여부 체크
 - 중복이 있는 경우 ⇒ 안행부등록의 공공데이터 목록 삭제 요청 (공공데이터명 Click 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하단의 삭제 버튼 Click)



【안행부등록 목록과 기관등록 목록간 중복 화면】

※ **안행부등록 목록과 기관등록 목록간 중복의 경우** 세부 항목 중복 여부 확인 후 '안행부등록 목록 삭제 요청'

**등록된 데이터는 송인심의를 거신 자료안 조회됩니다. 신청차료를 보시라면 '데이터 관리'데이터켓 등록요성현장' 화면에서 처라결과를 신청으로 선택 후 조회에서 확인하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수정·보완 (안행부·기관직접 공통)

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수정·보완 (10개 항목)

WHEN NIAC

- 공공데이터명칭(국문)은 [p.6 참조]하여 명칭의 의미 전달력, 제공 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신규 추가항목 등록 : 정보시스템명, 보유근거(법령), 분류체계 (BRM), 제공대상 유무, 향후제공 등
- 기 등록항목도 [p.23]을 참조하여 등록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등록
- ※ 필수 항목 미 기입 후 등록 요청시 반려 처리 됨
- ⇒ 특히,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개별 파일, 개별 서비스(Open-API) 등)를 각각의 목록 으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수정 보완 (수정 조치가 없는 경우, 목록 등록으로 불인정)

(예. 목록오류 : 공공데이터 목록 명- '12년 국가정보화백서, 시외버스도착정보 등)

이호영 D 목록 등록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조회 공공대미터캠래(국문) 제인정보보호전문강사 영단 응용대비티엠방(영문) 테워기라 유언의 등로 공공장사망이런 > 검찰 사하다[관 확단] 世界運運(BRM) 보유근기(법행) 위치(URL)정보 4934 **利料드(3개)** 공공데이터설명 미제공 사유 -**亚基门公 常草** CHOICE WAR (ALM VPX VPX VPX 한후제공 한후 해공연도 2014 사유 (切り取扱 데이터씃 등록요청한함 reaming. 개시반성편리 中型 434 **4**5 DEFEN NIAC

【공공데이터 목록을 수정하기 위한 조회 화면】

※ 미제공일 경우 명확한 사유 기입, 특히 '공개법' 제9조①항의2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본 사유 기입

3단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신규 등록

- 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절차
 - 왼쪽 화면 '목록 등록' Click → 기관별 전체 목록list 화면에서 '목록등록' 버튼 Click(p8참조)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기입 →등록→ 신규 목록추가
- ②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10개 항목) 등록
 - 공공데이터 명칭(국문)은 [p.6 참조] 하여 명칭의 의미 전달력,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세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10개 항목)는 [p.23]를 참조하여 기입 후 '등록' Click

【목록 신규 등록을 위한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입력 화면】





※ 미정비 목록 확인 방법

- ▶ 미정비 목록 확인 방법
 - 위젯 목록 접속 및 목록 등록 메뉴 클릭
 - 공공데이터 목록 화면에서 '수정일' 확인
 - *수정일시 3월12일전이면 미정비 목록

(3월12일 이후 수정하였으나 미정비 목록인 경우 (p22)의 반려사례에 따른 반려여부 확인 필요)

【미정비 목록 확인 화면】



- 목록등록/ 화면내 수정일 확인
 - ※ 수정일시 3월12일 전은 미정비 목록

(목록등록서 및 제공데이터 등록서 필수 입력 항목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려로 인한 미정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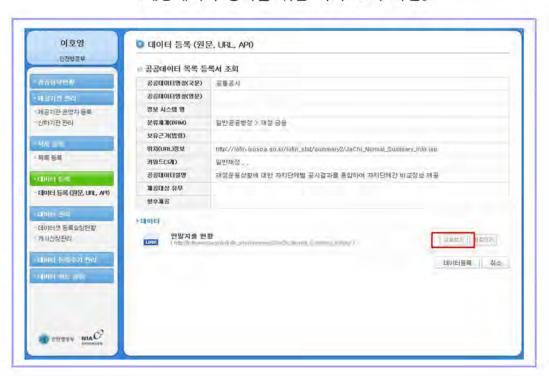
(< 1], 2 항목의 보유 목록 정비 완료 시 >>

③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1단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수정·보완 (포털제공중 데이터)

- ① 데이터 등록화면에서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왼쪽 화면 '데이터 등록'에서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정비 완료된 공공데이터 목록 중 '포털제공 중' 목록 Click
 -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화면 오른쪽 '상세보기' Click → '제공대 상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화면 이동 → 수정 버튼 Click

【제공데이터 등록을 위한 목록 조회 화면】







【삭제 또는 수정 버튼 클릭 후 화면】



-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13개 항목 수정
 - 실제 제공할 공공데이터의 세부 (13개)항목 수정·보완 [p.27 참조]
 - 데이터 등록 후 심의(승인 및 반려) 절차 진행
 - ※ 등록 요청한 제공대상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관리' → '데이터셋 등록 요청 현황' 메뉴에서 해당 데이터 심의 현황(신청·승인·반려 등) 확인 가능



【제공 데이터 세부항목 수정 화면】

⇒ 특히, 기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가 PDF 파일등 자유로운 수정, 변환, 추출이 불가능한 형태의 경우 기계판독이 가능한 포맷으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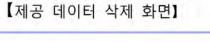
(예 : 한글→hwp, MS엑셀→ xls 등)

※ 미 교체시 데이터 개방 실태 점검시 불이익 발생



③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삭제

- 데이터 등록→ 목록선택→ 상세보기 → 삭제→ 삭제유형선택 및 삭제 사유→ 확인





⇒ 제공데이터가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삭제 요청시, 제공 데이터 등록서 먼저 삭제 후 목록 가능 (신규 등록 제공데이터 공통)

2단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신규 등록

- ①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왼쪽 화면 '데이터 등록'에서 정비완료된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 정비 완료된 공공데이터 목록 중 '제공대상' 목록 Click
 -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14개 항목 작성
 - 실제 제공할 공공데이터의 세부 (14개)항목 수정·보완 [p.27 참조]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시 '제공' 으로 선택하고 '향후제공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제공 데이터 세부항목 신규 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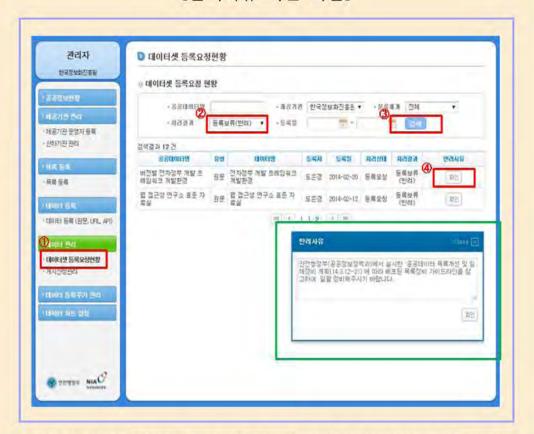
※ 반려 사례 및 반려사유 확인 방법

- ▶ 대표적 반려사례
 - 제공대상 데이터 명칭과 공공데이터(목록) 명칭이 동일 한 경우
 - 제공대상 데이터가 '현황' 데이터이나 제공데이터 명칭에 현황의 시점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

*예 : 제공 공공데이터 명칭 - 주차장 시설 정보 현황 (2013.3 현재) (○) 주차장 시설 정보 현황 (X)

- 등록서의 필수 항목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반려사유 확인 화면】



- 데이터 관리/ 데이터셋 등록요청현황→ 등록 보류 반려 선택→ 검색 클릭→ 반려 사유란 '확인'버튼 클릭 → 반려 사유 확인

④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등록[기본 공통사항, 10개 항목]

각 기관은 자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의 항목 및 설명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① 공공데이터명칭(국문)	☞ 등록	공공데이터의 국문 명칭	을 입력합니다.	
② 공공데이터명칭(영문)	☞ 등록	등록 공공데이터의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③ 정보시스템명칭	☞ 등록	공공데이터가 제공되는	정보시스템명칭을 입력합니다.	
④ 분류체계	BRM	☞ 등록한 공공데이터? 1~2수준)	가 속하는 분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BRM	
⑤ 보유근거(법령)	☞ 등록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법령 근거를 적습니다.			
⑥위치(URL)정보	☞ 등록	☞ 등록 공공데이터가 위치하는 대표사이트 URL를 적습니다.		
⑦ 키워드(3개)	☞ 등록 공공데이터의 대표 키워드 3개를 적습니다.			
⑧ 공공데이터 설명	☞ 등록	공공데이터를 간단히 설	명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중 제고대사 요요	제공[]		미 제공 [](법령사유:)	
⑨ 제공대상 유무	부분제공	[] (법령사유:)	
⑩ 향후제공	향후제공	[] (사유:) 향후 제공연도 (년도)	



① 공공데이터명칭(국문)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의 국문명칭을 입력합니다. ('II장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유의사항(p.5~6)'을 참고하여 목록명칭을 입력)
- ② 공공데이터명칭(영문)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의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선택항목)
- ③ 정보시스템명칭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가 제공되는 정보시스템명칭을 입력합니다. ※ EA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명을 기준으로 입력
- ④ 분류체계

[작성요령]

- 등록한 공공데이터가 속하는 분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BRM 1~2수준)
- ⑤ 보유근거(법령)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적습니다. 예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⑥ 위치(URL)정보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가 위치하는 URL을 적습니다.
- ⑦ 키워드(3개)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의 대표 키워드 3개를 적습니다.

⑧공공데이터 설명

[작성요령]

○ 등록 공공데이터를 설명하는 내용을 간단히 적습니다.

⑨ 제공대상 유무

제공대상 유무	제공 []	부분제공 [](사유:
गाउपाठ गान	미 제공 [](사유:	Y

[작성요령]

○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제공대상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결정하여 표기 합니다.

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 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에 표기합니다.
- [부분제공]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해당사유를 적습니다.

【참고】사유예시 : 개인정보보호법 oo조 oo항

- [미제공]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표기하고, 해당사유를 적습니다.
 - ※ 특히, 미제공사유가 '공개법' 제9조①항의2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외교관계,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입

【참고】사유예시 : 개인정보보호법 O조 O항, 공개법 제9조1항 국가안전보장

10 향후제공

) 향후 제공연도 (년도) 향후제공여부 향후제공 [](사유:

[작성요령]

○ [향후제공] 법 제17조에 따라 ⑩ 제공대상 유무의 항목 중 '제공'에 표기했으나 즉시 제공이 불기능한 경우, 그 시유와 향후 제공연도를 표기합니다.

【참고】향후 제공사유 예시: 제공방식 부재(실시간 데이터- 오픈API 미개발 등) 등

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14개 항목)

각 기관은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 중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실제 공공데이터와 상세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제공대상 공	공데이	터 등록	사			
① 제공 공공데이터 명칭	ं 실제 제공할 등	물리적 -	공공데이E	· 명	칭을 입력	력합니다	
② 제공 공공데이터 설명	☞ 제공 공공데이	터를 긴	단히 설명	명하는	내용을	일 입력합	니다.
③ 제공 공공데이터 제3자 권리 포함 유무	제3자 권리(저 당 미포함[] 제3자 권리(저 의 미포함[] 회보[]			등 권리	작권 소유권 등) 포함 [] 이용허락 등 권리 미확보 []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
④ 이용허락범위	저작자표시-변경	금지	T (I)]	저작자표	표시-비영	리-변경금지 []
	저작작표시-동일조	건변경	허락[]		저작자표	니-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⑤ 제공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 제공 공공데이 반기, 년간, 주				입력합니	니다.(일긴	t. 주간, 월간, 분기,
⑥ 제공 공공데이터의 다음 등록 예정일	년 월 일 시스템에서 일정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단, 일간, 주간은 다음등록일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⑦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	무료[]				유료 [J	
®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건 [] (부과단위:) 금액()	(부	용량 [] 과단위: ()	이용기 (부과단 금액 (위:)	기타 [] * 부과기준, 단위 등이 포함된 자료 별도제줄 금액 ()
	내려받기(다운로드) 제공 []			i	Open API 제공 []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LOD 연계URL []		
⑨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제공데이터 URL 기재)				그 밖의 제공 형태 [] (제공 방식:)		
⑩ 제공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	텍스트[]	오디의] 0	אוחול	11	비디오	[] 그 밖의 매차 [](유형:)
⑪ 매체 유형별 건수	☞ ⑩매체 유형별	건수를	입력합니	다.			
⑫매체 유형이 제공하는 파일 대표 확장자명	☞ ⑫매체 유형이	제공하	는 파일 등	등의	대표 확	장자명을	입력합니다
® 언어	한국어 []	35	경어 []	3	한국어 + 영어		그 밖의 언어 [] (언야)
ꂌ 그 밖에 이용 시 유의사항	☞ 이용자의 공공대	10E	용 시 준	수해(야 할 사	항을 입력	합니다.



① 제공 공공데이터 명칭

[작성요령]

○ 실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참고】

【공공데이터 명칙 작성 예시】

⇒ 제공 공공데이터 명칭 작성 예시

공공데이터명칭	제공 공공데이터명칭
그기저난숙비니	2012년 국가정보화백서
국가정보화백서	2013년 국가정보화백서 등
시오시코쉬청그트저너	지하철 도착시간정보
서울시지하철교통정보	지하철 배차간격정보 등

【제공 공공데이터 명칭 등록 예시】

⇒ 제공 공공데이터명칭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시 작성한 공공데이터 명칭을 세분화한 명으로 작성해야함

(오류유형 1) 공공데이터명칭보다 범위가 넓음

공공데이터명칭	제공 공공데이터명칭		
임상연구 피험자DB	피험자정보		
임상연구 과제DB	과제정보		

(오류유형 2) 공공데이터명칭과 동일

공공데이터명칭	제공 공공데이터명칭		
2011년 통계연보	2011년 통계연보		
OO맛집	OO맛집		

② 제공 공공데이터 설명 기재

[작성요령]

○ 실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설명하는 내용 이용자 관점에서 50자 이내로 기입합니다.

③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3자 권리포함 유무

[작성요령]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3자 권리포함 유무에 따라 해당란에 표기합니다.

④ 이용허락범위

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표시 - 비영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1

[작성요령]

- '③'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원 권리자의 이용 허락 범위에 따라 세부 이용허락범위 유형을 선택
- · 저작자 표시
 -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변경금지
 -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래도 이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 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 ⇒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 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⑤ 제공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

[작성요령]

- 제공 공공데이터의 갱신(업데이트) 주기를 입력합니다.
 -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년간, 주기없음, 수시 中에서 선택
- ⑥ 제공 공공데이터의 다음 등록 예정일

[작성요령]

- 제공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데이터가 바로 다음 갱신되는 일자를 입력합니다.
- ⑦ 제공 공공데이터의 비용부과 유무

[작성요령]

- 제공 공공데이터의 비용부과 유무에 따라라 해당란을 선택합니다.
- ⑧ 제공 공공데이터의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 (부과단위:)	이용량 [] (부과단위:)	이용기간 [] (부과단위:)	기타 [] * 부과기준, 단위 등이 포함 된 자료 별도제출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작성요령]

○ '⑦' 제공 공공데이터가 유료인 경우, 해당되는 비용부과기준을 선택하시고, 부과단위와 금액을 기입합니다.

【참고】

- ⇒ (건) 활용건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가할 경우 해당란에 표기하고, 부과단 위는 제시한 비용을 부가할 단위 건수를 작성
- ⇒ (이용량) 이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가할 경우 해당란에 표기하고, 부과 단위는 제시한 비용을 부가할 단위 용량(00KB, 00MB, 00GB 등)을 작성
- ⇒ (이용기간)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가할 경우 해당란에 표기하고, 부과단위는 제시한 비용을 부가할 기간(00일, 00개월, 00년 등)을 작
- ⇒ (기타) 비용부과와 관련한 기관의 정책이 있다면 해당란에 표기하고, 근거자료 제출

⑨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작성요령]

○ 제공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란을 선택합니다.

▶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별 등록 방법

제공형태	공공데이터 등록 방법		
Open API 제공	Open API 연계모듈을 반영하고 포털에 등록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선택하여 포털에 업로드 등록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해당 공공데이터 URL을 포털에 등록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록 불필요(기관 배송)		
LOD연계URL 등록	해당 공공데이터 URL을 포털에 등록		

※ 기관자체 다운로드로 제공하는 경우, 데드링크(dead link)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요망



① 제공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

[작성요령]

- 제공 공공데이터의 매체 유형에 해당되는 란을 선택합니다.
- ① 제공 공공데이터의 매체 유형별 건수

[작성요령]

- '⑩'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매체 유형별 제공 건수를 기입합니다.
- ① 매체유형이 제공하는 파일의 대표확장자명

[작성요령]

○ '⑩'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매체 유형이 제공하는 파일의 대표 확장자명을 기재합니다.

【참고: 매체 유형별 확장자 예시】

- ※ 텍스트(txt, doc, hwp 등), 오디오(mp3, wma 등), 이미지(jpg, gif, bmp 등), 영상 (wmv, avi, mp4 등)
- ※ 수정·변환이 불가능한 PDF 등 데이터의 수정, 변환, 추출 등이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데이터 형태는 등록 불가
- (13) 언어

[작성요령]

- 제공 공공데이터가 해당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 ◑ 그밖에 이용 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50 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IV

행정 사항

- O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추가 일제 정비기간 : '14. 4. 14 ~ 4. 25
 - 기관별 보유 목록 중 미정비 목록에 대한 정비 완료
 - 공공데이터 목록 증 '제공' 목록은 제공데이터 등록 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
 - ※ 기관 임의로 삭제 요청한 목록은 검토 및 재정비 실시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심의 및 공표 : '14, 5월 예정



공공데이터제공법 주요 개요 붙임 1

□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감을동의원) 발의 ('127.31)
- O 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3.6.27) → 공포('13.7.30) → 시행('13.10.31)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추진 절차 ☞ [붙임] 공공데이터법 주요 내용 참고

구분	안 행 부	공공기관
제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고시(11조) (공공데이터의 생성·구축·등록제공·표준화 등) - 표준정책 시행(23조) (제공 형태·기술, 제공 분류체계 등) · 표준 준수여부 조사→시정요구	- 관리지침에 따라 데이터 관리 - 표준지침 준수
조직	- 공공데이터 전략위 실무위 전문위 구성(5조) - 제공분쟁조정위 구성(29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위 상정(7조) * 매 3년마다 수립 공공기관에 전략위 심의·의결된 기본계획 시행 * 1231일까지 심의의결 공공기관에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 	-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8조) (전년도 추진실적, 다음해 시행계획) - 1월말까지 전략위 제출(2월말까지 심의)
평가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9조)→평가결과 전략위·국무회의보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공표→시정요구 *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공표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시스 템 구축· 운영	- 공공데이터목록 등록 시스템 구축(18조) - 목록누락 정보 등록 독려 - 공공데이터 목록 전략위 상정·의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공표 (제공목록, 이용요건 등)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시행일이전 자료 : 시행일 30일이내 · 시행일이후 자료 : 생성일부터 15일이내
	- 공공데이터포털 운영((21조) ·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연계·제공 요청 (이용불편사항신고 품질오류 신고창고 마련)	-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유지
제공 기반 구축 및 제공	- 품질관리 정책 수립(22조) - 품질진단평가·공표 및 시정요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확보 조치품질기준 마련, 품질진단 실시
	- 제공형태 정비 등에 지원(24조) - 교육훈련 시책 마련(25조) (매년 1회이상 담당자대상으로 공공데 이터 관리·제공 전문교육 실시)	- 공공데이터 정비, 제공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반기별로 안행부 장관에게 통보(령25조)- (이용자, 제공일자, 제공내역 등)

□ 공공데이터제공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조문	내용		
총칙	목적·정의	 목적: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0호여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보장		
정책 수립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 설치	- 주요 정책심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신설 - 기능: 기본계획수립·변경,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심의·의결 등		
	기본 · 시행계획 수립 및 제공 운영실태 평가	-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행부) - 매년 시행계획 수립(중앙·지자체의 장)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전략위와 국무회의 보고 후 공포 → 우수기관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선정·포상(안행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임명 및 활용지원센터 설치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총괄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를 임명하고 안행부장관에 통보 -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작권 등 ※ 단, 제공 제외한 - 공공데이 장관(공공 공공데이터 등 한행부공 홈페이지 - 품질관리 품질관리 - 제공기반		 제공대상 범위: 공개법 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 단,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의무화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공공기관의 장은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정보를 안행투 장관(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확정·공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 안행부장관 제공 목록 종합·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제공대상 목록 홈페이지 공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을 위한 조치 시행 제공기반 구축: 공공기관의 장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정비 및다양한 형태의 제공방안 구축 등 		
<i>공</i> 공 데이터 제 공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 ' ' ' ' ' ' ' ' ' ' ' ' '		
보칙	면책	- 공공데이터 품질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 주요 용어 정의 >

○ 공공데이터 :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 공공데이터 예 >

- •데이터베이스(DB):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명상 등) → (예) 버스 운행 정보 DB, 관광정보 DB
- ▶ 전자화된 파일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지 않고 개별 파일 형태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각 분야의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통계연보,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예: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개방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 >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 방 + 제 공
목적	[국의 일취리 주목과 에션 구역시 제기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 일반 소프트웨어(아래한글, 엑셀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정, 변환 등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 ※ 기계 판독 불가능한 형태 예 : PDF 파일(Adobe Reader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

<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기본 충족요건 >

• PDF와 같이 특정 소프트웨어(아래한글, 엑셀 등)에서 최초 생성한 공공데이터 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한 경우(생성: .hwp → 변환: .pdf) 이용자가 수정, 변환 등 가공할 수 없으 므로 최초 데이터 생성 포맷(hwp, excel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충족요건

불임 2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기능 (위젯) 다운로드 방법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미가입시 기관 회원 가입]

① (STEP 1)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② (STEP 2) 회원가입에서 '기관회원'을 선택한 후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 반드시 기관회원으로 가입

③ (STEP 3) '이름, 이메일' 입력 후 [가입확인]을 클릭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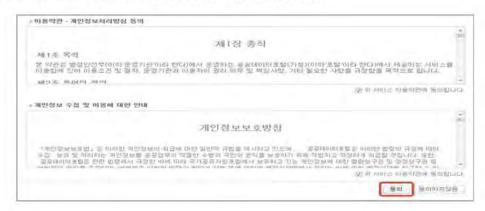


④ (STEP 4) '사업체명,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⑤ (STEP 5) 약관 확인 및 체크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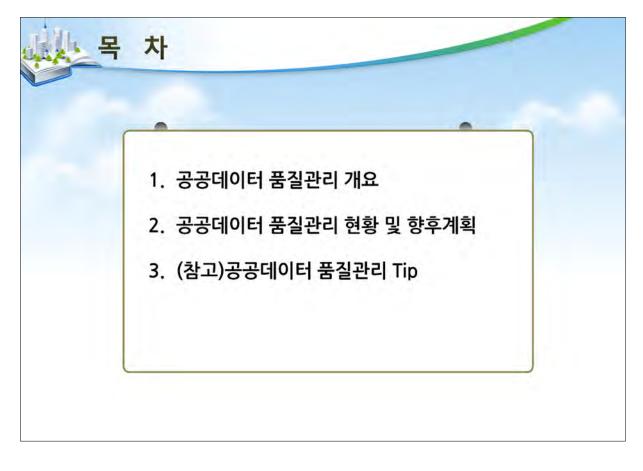


6 (STEP 6) 가입자 기본정보, 연락정보, 기관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완료]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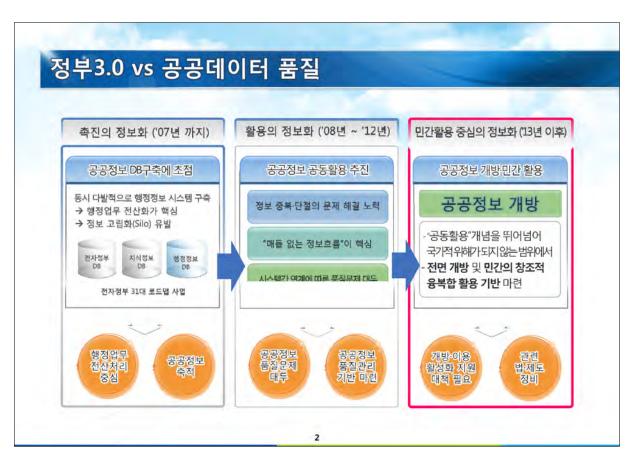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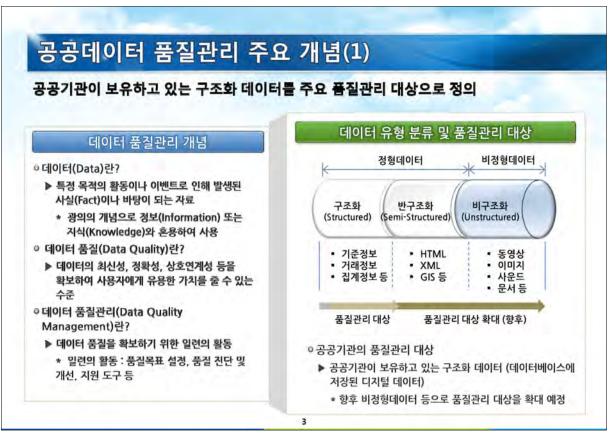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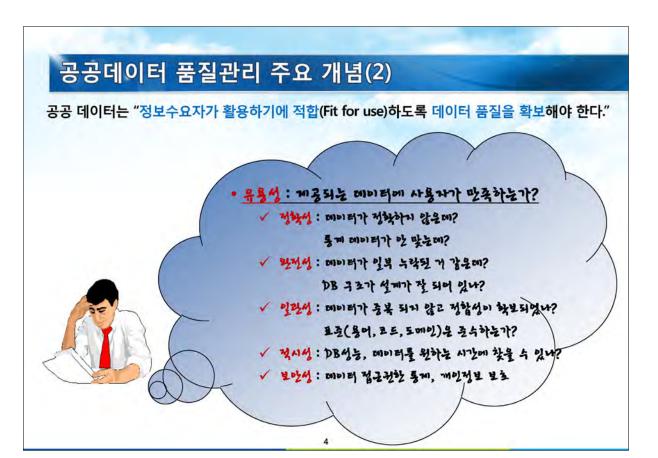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2014. 5. 정승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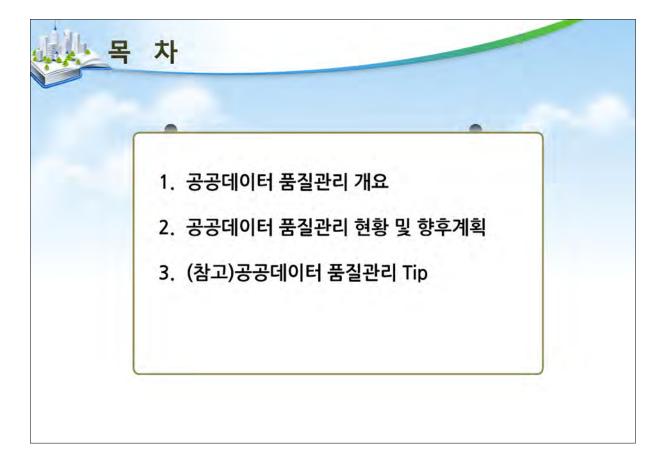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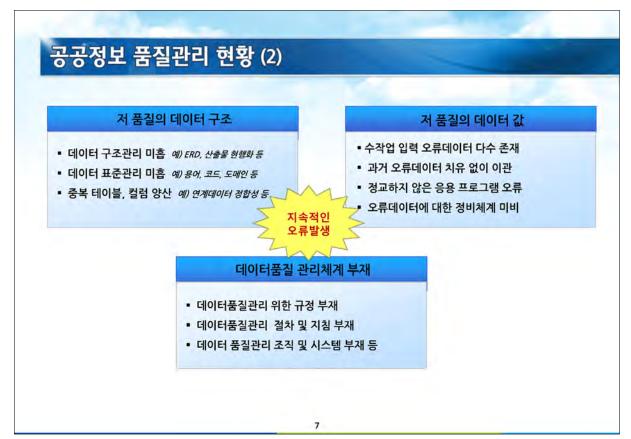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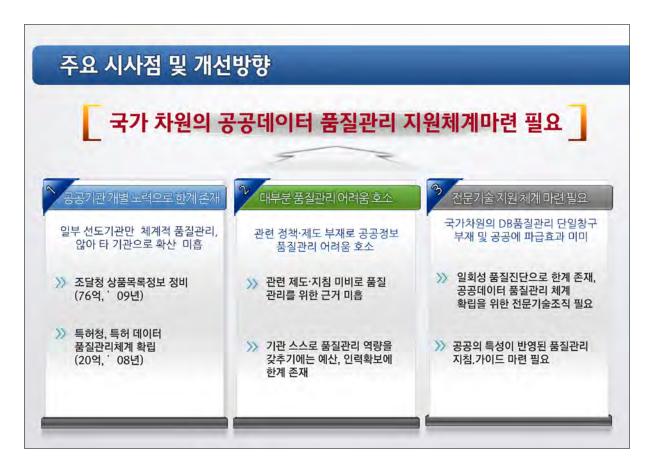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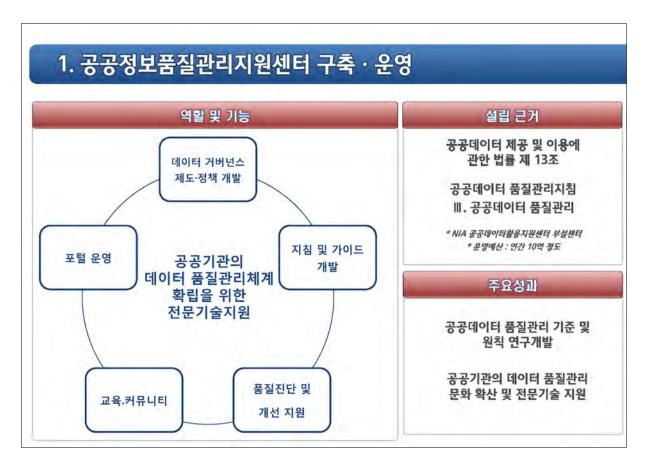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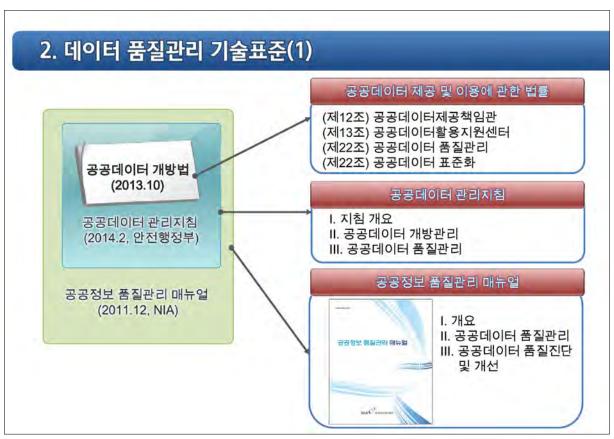












2.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표준(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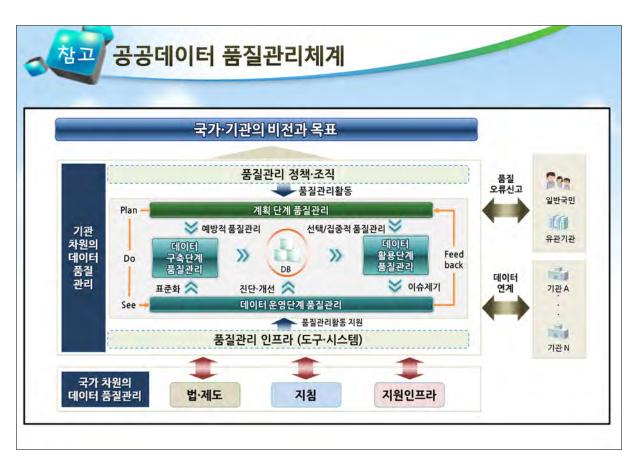
-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mark>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mark>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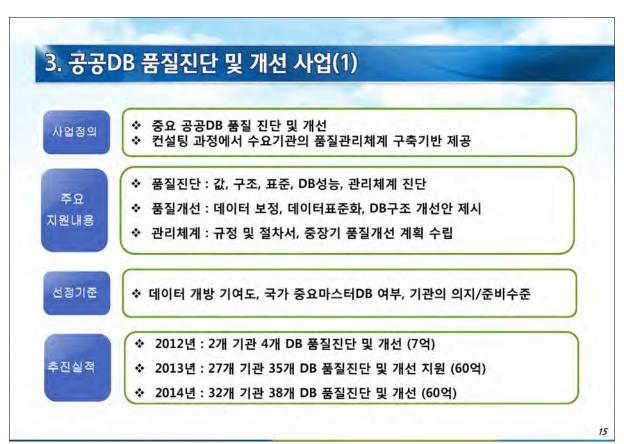
공공 데이터 관리지침 (안전행정부 고시)

-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중략)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증략) 해당기관의 정보화 계획 수립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략)
- (품질모류 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품질모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적, 비전자적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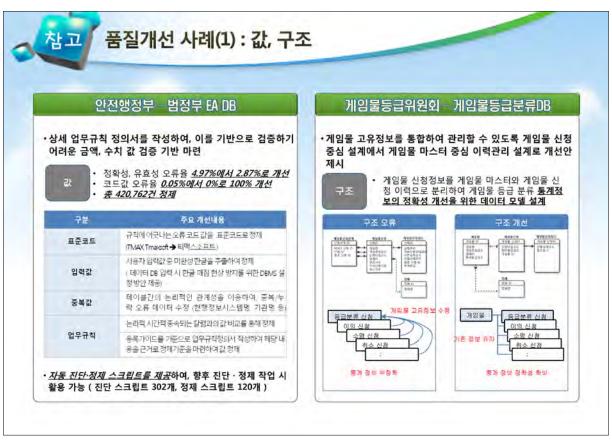
2.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표준(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은 「총론, 데이터품질관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붙임 , 으로 구성 붙임 데이터 품질관리 개요 제1장 이 매뉴얼 개요 총 론 이데이터 품질관리 용어 및 개념 ○ 관련서식 국가/기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 이 체크리스트 제2장 ODM Framework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O DQ Index ○ 단계별 세부활동 및 내용, 예시 및 고려사항 제시 Data life cycle 계획 → 구축 → 운영 → 활용 0 품질 오류 유형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 및 주요 활동 제3장 © DQ Accesment and improvement Framework 정의 데이터 품질 ○ 단계별 세부활동 및 내용, 예시 및 고려사항 제시 진단 및 개선 Define → Measure → Analyze → improve → implement →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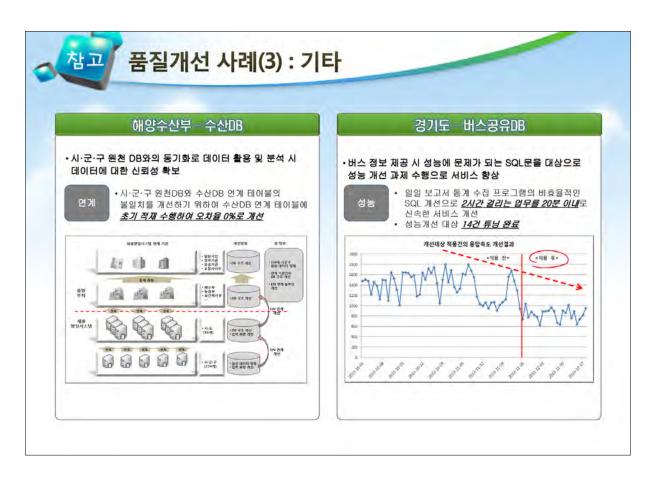








품질개선 사례(2): 연계, 성능 해양수산부 수산DB 경기도 버스공유DB •시·군·구 원천 DB와의 동기화로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시 · 버스 정보 제공 시 성능에 문제가 되는 SQL문을 대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성능 개선 과제 수행으로 서비스 향상 • 일일 보고서 통계 수집 프로그램의 비효율적인 • 시·군·구 원천DB와 수산DB 연계 테이블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DB 연계 테이블에 SQL 개선으로 *2시간 걸리는 업무를 20분 이내*로 신속한 서비스 개선 초기 적재 수행하여 오차율 0%로 개선 • 성능개선 대상 <u>14건 튜닝 완료</u> 개선대상 적용건의 용답속도 개선결과 <48 4> 超自 - २१६७ स.२.२ सस्य वर्गन श्रम 변제 기본경제 DE 구조 개선 画 25 5 AU UA 4.5 · 대한 구호 개선 • 대학 위한 개선 · 등단 데이지 함께 되 · 함께 되면 개인 되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문화 확산

- 품질관리 실시
- 품질관리 지침 및 매뉴얼 교육
-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및 사례
- 품질관리 실무교육 실시
- 품질진단 및 개선 방법론
- ~ 품질진단기법 (프로파일링, BR기반 업무규칙 도출)
- 데이터 표준화 절차 및 방법



< 13년 실적> 337개 기관 496명 교육실시

- 품질관리 인식 강화 및 문화의 확산
- 기획기사, 홍보동영상, 뉴스레터, 이벤트 등 실시
- 품질관리 우수사례집, 품질관리 솔루션 자료집 등 발간



< 13년 실적> 커뮤니티, 소규모 세미나 6회 실시 등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문화 확산

주요 제공 서비스

- ◎ 품질관리 관련 종합적인 지식 제공
- 관련제도, 지침, 매뉴얼, 교육동영상, 모범사례, 관련동향 등
- 상담창구(Helpdesk, Q&A 게시판)을 통한 상시 기술지원
- -전문 운영인력 6명 상주(NIA 2명, 외부위탁 4명)

< 13년 실적> 회원 수 : 273명 → 2,011명 상담 및 컨설팅 : 42회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경과 및 실적 11.3.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ISP 111.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안행부고시 2011-25호) 12.1.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전 공공기관 배포 12.2. 공공정보 품질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포털(gooddata.go.kr) 오픈 12.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정 13.2. 공약과제: 정부3.0 (공공정보 개방, 공유 확대, DQM 등) 13.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3.10.31) '13.10. 품질관리 지원 사업 확대 (연간 15억 → 70억)





-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요
-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3. (참고)공공데이터 품질관리 Tip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Tip (1/5)

-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화된 데이터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품질관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간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mark>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구조화 데이터가 우선적인 품질관리 대상</mark>이 됩니다.

- 2. 모든 공공기관은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 A. 기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품질관리 규정이 있어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자체적인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mark>관련</mark> 예산 확보, 품질관리 조직 구성 등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상시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Tip (2/5)

- 3. 저희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도 크지 않고, 전체 직원도 많지 않은데 꼭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하나요?
- A.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지정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지정·공표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공공데이터제공법 제12조)의 주요 업무에 데이터 품질관리 포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데이터의 규모도 큰 중앙부처의 경우,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예: 특허청) 특허청에 품질관리 실무자 1명을 지정하며 전담하며, 특허정보원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운영

- 4. 각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공공데이터제공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 업무에 포함합니다.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 연계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접수/처리, 표준관리 및 구조관리, 품질관련 문서의 최신성 유지 및 이해관계자 통지, 기관의 품질관리 영향에 미치는 사항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Tip (3/5)

- 5. 기관 전체의 데이터 표준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 기관 전체의 데이터 표준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은 표준코드, 표준데이터사전, 표준도메인사전입니다.

 - 표준코드: 기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할 기관 전체의 표준코드 목록을 의미 •표준데이터사전: 기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할 기관 전체의 표준용어 목록을 의미 •표준도메인사전: 기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컬럼)들이 갖는 공통의 특성인 데이터타입, 길이 등을 그룹화하여 기관 전체의 표준으로 정의한 것을 의미
- 6.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표준 적용이 미흡한 것을 알지만 조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준을 적용하려면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고, 응용프로그램도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적용은 향후 유지보수사업이나 차세대사업, 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표준화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Tip (4/5)

- 7. 저희 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중에서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A. 패키지 솔루션 등은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계 데이터도 연계 호환성을 위해 제공기관이 제시하는 데이터 표준을 그대로 유지 가능)

단, 해당기관이 <mark>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표준을 반드시 적용</mark>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예: 시군구 새울행정시스템 등)는 해당 표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 적용(범정부 차원의 행정표준코드 및 행정표준용어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8. 자체 개발이 아닌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A. 패키지나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관점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산출물 목록을 정의하고, 구축사업자 등을 통해 관련 산출물이 작성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Tip (5/5)

- 9. 우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소관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지원포털(www.gooddata.go.kr)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컨설팅과 품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품질수준 자가진단은 스스로 기관의 데이터 품질수준을 간편하게 진단하여 품질수준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기능으로 설문응답 형식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 쉽게 품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 1단계(관리수준 자가진단): 간편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식, 품질관리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진단
 - 2단계(품질관리지표별 자가진단): 품질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이용 진단, 지표별 품질관리 현황과 관리수준을 확인
- 10.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수행하나요?
- A.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에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품질향상 및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기술 상담, 품질진단 및 개선사업, 품질관리교육,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지원포털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관련 최신동향, 우수사례, 지식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